

연구보고(수시과제)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공론의 장으로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정책의 문제점 진단
- 통합 논의에 따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

2. 연구내용

-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분석
-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분석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근거와 문제점 분석
- 청소년정책연구과제의 제안

3. 연구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 보고서 분석
- 청소년학 및 정책분야 전문가와 대표자들로 청소년정책포럼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고유영역과 학술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생성을 주도함으로써 청소년학의 고유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동시에 청소년정책포럼 운영위원회로 포럼에서 진행할 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 진행

- 청소년정책포럼은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소년학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학 및 정책분야의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포럼의 주제로 제안, 이론적·정책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됨
-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은 공개적인 토론방식이 아닌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장으로 청소년정책연구 자문위원 중심으로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청소년미래포럼 및 아동미래포럼으로 계승됨

4. 연구결과

-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외에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분야 뿐만 아니라 아동분야의 보다 정교한 논의의 장으로 청소년미래포럼 및 아동미래포럼 제안
- 청소년 미래포럼과 아동 미래포럼은 매회 선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적인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창립 20주년 행사인 「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2009. 6.11 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 예정
- 이 연구는 통합논의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정책의 과거, 현재를 진단해 보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발표내용들과 많은 논의들이 향후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아동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	
1. 아동정책의 현황과 평가	11
2. 아동정책의 발전방향	18
3. 아동정책의 추진전략	20
III.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	
1. 청소년 정책의 정체성과 과제	31
2. 청소년 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그 대응	43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조화로운 만남	48
IV.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1. 청소년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	57
2. 생애전기통합형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	70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93
2. 결론	95
참고문헌	96
부 록	
1.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103
2.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111
3. 제1회 청소년 미래포럼 회의결과	117
4. 제1회 아동 미래포럼 회의결과	123

표 목차

<표 II-1> 아동정책 3개 대책과 세부과제	15
<표 III-1> 청소년 육성 5년 계획별 정책과제	42
<표 IV-1>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향후 방향	68
<표 IV-2>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조정기구와 정책계획의 현황	79
<표 IV-3>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날줄과 씨줄 원리) 제안	83

그림 목차

[그림 I-1]	한국청소년정책포럼 홈페이지	7
[그림 II-1]	서비스정책의 분석틀	13
[그림 II-2]	능동적, 제도적 아동서비스 체계	23
[그림 IV-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과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비교	65
[그림 IV-2]	아동트러스트 서비스내용과 체계	81
[그림 IV-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8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통합 논의에 직면해 있다.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고유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청소년 정책 역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출발로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등장하였고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2007년도까지 제3차에 걸쳐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논의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정책은 교육과 문화, 복지정책의 사이에서 청소년정책 고유의 영역이 계속 변경되어 오면서 그동안 청소년정책 분야의 고유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정부조직 개편 시 마다 청소년관련 부처의 통폐합이 논의되는 등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결여는 청소년정책의 발전으로 저해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청소년학이라는 이론적 기반의 결여로 이론이 실천을 견인해 내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아동정책 역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대책에 머물러 왔다는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론의 장으로써 청소년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서 통합 논의에 따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괄하고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해서 공론의 장인 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발표와 논의를 거쳐 종합화하고자 하였다.

2)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아동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괄하고 아동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며 향후 방향에 관해서 공론의 장인 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발표와 논의를 거쳐 종합화하고자 하였다.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근거와 문제점

이 연구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인지,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론의 장인 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발표와 논의를 거쳐 종합화하고자 하였다.

4) 청소년정책연구과제의 제안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발표와 논의를 통해 정기적 포럼 및 청소년정책포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 중에서 이론적·정책적 중요성이 확인된 연구주제는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도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 보고서들을 분석하였다.

2) 청소년정책연구 자문위원회

청소년학 및 정책분야 전문가와 대표자들로 청소년정책포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고유영역과 학술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생성을 주도함으로써 청소년학의 고유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자문위원회는 청소년정책포럼 운영위원회로 포럼에서 진행할 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008년 3월 28일, 5월 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청소년정책연구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교수)
- 김 민(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학과 교수)
- 남형기(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장)
- 유성렬(백석대 청소년학과 교수)
- 이광호(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 이민희(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유성(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아미(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한상철(대구한의대 청소년학과 교수)

3)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포럼은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소년학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학 및 정책분야의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포럼의 주제로 제안, 이론적·정책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포럼은 두 차례 개최되었다.

- 제1회 한국 청소년 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15:00-18:00
 - 장소: 한국교총 대회의실 (2층)
 - 발표: 이광호 교수(경기대),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 과제
 - 토론: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 제2회 한국 청소년 정책포럼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 일시: 2008년 5월 6일(화) 15:00-18:00
 - 장소: 한국교총 대회의실 (2층)
 - 발표 1 : 이봉주 교수(서울대), 아동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
 - 토론자 1: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문성호 교수(중앙대)
 - 발표 2 : 송병국 교수(순천향대),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
 - 토론자 2: 유성렬 교수(백석대), 오정수 교수(충남대)

이와 함께,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 내용 안내 및 포럼 발표문, 토론 결과 소개, 온라인 의견개진 등을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I -1] 한국청소년정책포럼 홈페이지

3)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은 공개적인 토론방식이 아닌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장으로 청소년정책연구 자문위원 중심으로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청소년미래포럼 및 아동미래포럼으로 계승되었다.

○ 제1회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

- 일시: 2008년 4월 11일(화) 16:00~18: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라일락실
- 논의주제:
 1. 아동청소년정책실 출범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2. 아동·청소년의 연령구분과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3. 연령중복과 관련된 정책·사업 현황 및 대안

○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워크숍

- 일시: 2008년 7월 14일(월) 오후 3시~5시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실(1004호)

- 논의주제: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개발체계의 발전방향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조성연 교수(호서대), 아동(정책) 연구실태와
향후 과제
- 토론자: 송병국 교수(순천향대), 우남희 교수(동덕여대), 이광호
교수(경기대)

○ 제1회 청소년미래포럼

- 일시: 2008년 12월 9일(화) 10:00~13: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동백홀
- 논의주제: 2009년 청소년미래포럼 운영계획 수립

○ 제1회 아동미래포럼

- 일시: 2008년 12월 10일(수) 10:00~13:00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회의실
- 논의주제: 2009년 아동미래포럼 운영계획 수립

Ⅱ. 아동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

1. 아동정책의 현황과 평가
2. 아동정책의 발전방향
3. 아동정책의 추진전략

II. 아동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¹⁾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정책은 여전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대책에 급급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까지의 아동정책 자체가 요보호 아동의 보호에만 치중하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 속에서도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의 증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종래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서의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아동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현황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통해 중장기 아동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발전방향의 기초 위에서 중장기 아동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아동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분석의 틀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을 위하여 이곳에서는 서비스의 목적과 유형의 분류에 따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구도는 크게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센펠드는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인간식별 서비스(people-processing), 인간유지 서비스(people-sustaining), 인간변화 서비스(people-changing)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Hansenfeld, 1983). 인간식별 서비스는 서비스 체계에서 사정(assessment)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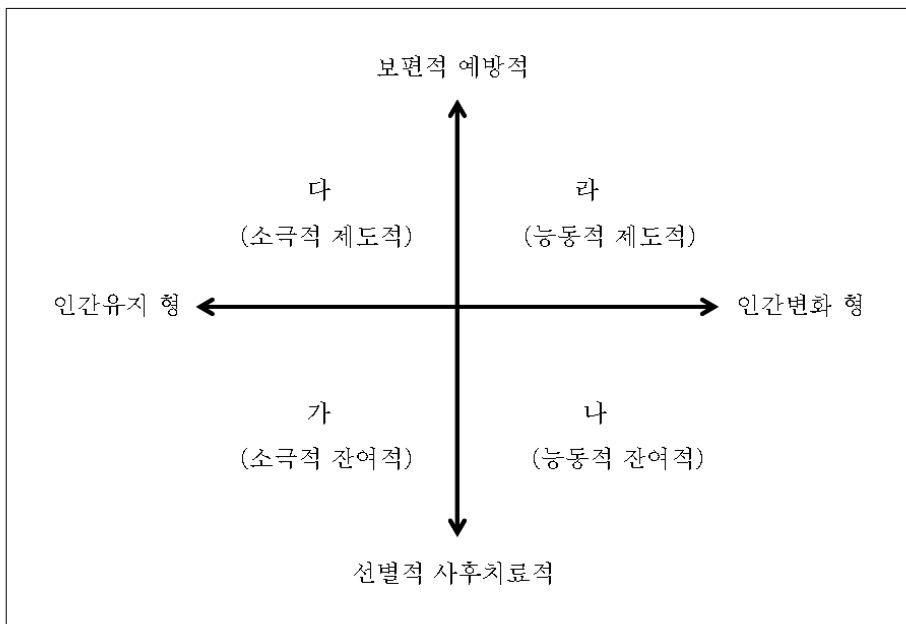
1) 이 글은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에서 이봉주 교수가 발표한 내용임.

클라이언트를 분류하고 사회적 명칭을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예를 들면,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급식비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하는 그 자체가 인간식별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간유지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저하된 복지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아동복지 시설을 통한 아동양육 서비스의 제공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적부조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변화 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중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통하여 복지상태의 개선을 추구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유형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 아동들에 대하여 제공되는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은 크게 문제해결중심의 사후치료적 서비스와 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한 개입인 예방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razek and Haggerty, 1994). 이때, 서비스의 유형이 보다 예방적이 될수록 서비스의 형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유형이 사후치료적일 수록 서비스의 형태가 선별적으로 제공되게 된다. 가령 전체 영유아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편적인 예방 서비스 유형이며,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된 아동에 대한 치료 서비스는 문제해결중심의 사후치료적 서비스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위의 서비스 목적에 의한 서비스 정책구도의 파악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를 설정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센펠드의 세 가지 서비스 목적 중 인간식별 서비스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서비스의 목적을 크게 인간유지 서비스와 인간변화 서비스로 나누어

본다.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크게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와 선별적 사후치료적 서비스로 나누어 본다. 그러한 두 가지 축에 기초한 서비스 모형의 분류틀은 [그림 II-1]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II-1] 서비스정책의 분석틀

[그림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의 목적이 일정한 복지상태의 유지라는 소극적인 대책과 그러한 서비스가 문제발생 후 문제집단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게 되는 서비스 정책의 구도는 “가” 형으로 소극적 잔여적(passive and residual)인 모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에 대치되는 모형은 “라” 형으로 인간변화를 통한 증진된 복지상태를 목적으로 하며 그 서비스의 유형도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모형은 능동적 제도적(active and institutional)인 서비스 모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의 역량을 키우는 투자형 아동복지체제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짜여진 체계가 능동적이고 제도적인 모형이다. “나” 형과 “다” 형은 소극적 잔여적 서비스 모형에서 능동적 제도적 모형으로 발전하는 단

계에서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가 강조되거나 인간변화 목적이 우선적으로 강조됨으로써 나타나는 과도기적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개념과 목표만을 살펴보면 과거의 정책구도를 소극적 잔여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지향점을 능동적 제도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5).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지향성이 아동정책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또 만약 구현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목표의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체계는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호·육성 대책, 어린이 안전대책,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의 3개 대책으로 구성되어있다(아동정책실무위원회, 2005). 이러한 정책목표와 대책의 설정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적어도 정책목표의 설정에서는 아동의 권리신장이라는 보편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종래의 요보호 아동 서비스 체계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능동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 목표 자체를 ‘... 성장하는 사회실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환경에의 개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정책의 목표 설정에서 보다 아동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3개 대책들과 이행과제들이 그러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아동정책 3개 대책과 세부과제의 분석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3개 대책과 총 15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단위과제를 분석해보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활성화, 아동

권리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 과제 정도만을 들 수 있다. 선별적 사후치료적 서비스의 내실화는 국내입양의 활성화,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 급식아동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미아찾기 지원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표 II-1〉 아동정책 3개 대책과 세부과제

대 책	추진과제
어린이 보호·육성 대책	1. 어린이 권리영역(7) 2. 어린이보건복지서비스지원(8)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5) 4. 어린이 교육·육성(9) 5. 아동관련 국제협약(3)
어린이 안전대책	1. 교통안전(16) 2. 익사사고 대책(5) 3. 추락사고, 화재·약물·용품 등 사고대책(16)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28) 5. 아동학대 및 폭력, 미아찾기, 불량식품 방지 대책(11)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8) 2. 빈곤아동·청소년 건강 성장 보장(10) 3. 균등교육·보육기회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8)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5) 5.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6) 6.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9)

자료: 아동정책실사무위원회,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p. 1

주: ()안의 숫자는 세부추진과제의 수를 나타냄

중점 추진 단위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권리증진과 아동안전 대책의 경우 그 주요 추진계획이 주로 교육과 홍보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능동적인 인간변화형 서비스 모형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인간유지형 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가 능동적인 인간변화형 모형에 가장 근접한 형태인데,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05년에는 그 수를 50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하지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원액의 규모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적극적인 인간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힘든 형편이며, 그러한 열악한 지원체계 하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아동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급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동양육 지원강화 추진계획의 골자는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대표되는데 2005년부터는 양육비를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그 대상을 여전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국한하고 있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는 볼 수 없다.

선별적 사후치료적 서비스의 내실화는 주로 종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증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가령 예를 들면, 시설거주아동의 복지증진은 낙후된 아동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운영을 개선하며,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립 지원 규모나 수준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고지원기준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없이는 그 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설 아동의 퇴소 시에는 현재 자립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지원단가가 낮아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적 사후치료적 서비스의 내실화에서 그나마 구체적인 방안이 실행된 경우는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3년에 신설된 전국 16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신설되기 시작한 전국 17개소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들 수 있다.

아동정책 분야에서의 중요한 발전은 2004년 7월 1일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이다. 우리사회의 늘어나는 빈부격

차와 그에 따른 빈곤의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종합 대책은 소극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를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6개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 빈곤아동·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 균등 교육·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
-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위에 제시된 정책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기존의 소극적-잔여적 서비스 모형에서 능동적-제도적 서비스 모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Child Support제도의 도입,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기본생활의 보장을 내실화하는 기반 위에, 성장단계별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추진방향은 빈곤아동들에 대한 인간변화형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체계로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책방향에 비하여 사업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특히, 빈곤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기존 연구들에서 판명된 영유아 대상의 교육·건강·복지 연계사업의 경우는 현재 그 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행하는 정도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 형편이다.

2. 아동정책의 발전방향

1) 정부차원에서의 발전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아동정책 체계에서 전반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신장을 통한 인간변화-보편적·예방적 서비스 모형이 아동정책 분야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능동적인 제도적 모형의 서비스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현재는 아동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아동복지나 가족복지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서문희 외, 2004). 다만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규모로 아동·가족복지 서비스 예산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총 예산은 GNP의 약 0.6%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무척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보편적·예방적인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과제이다.

둘째,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모형은 단순한 현물·현금급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를 통한 인간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에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나, 현행 아동정책 체계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서비스 전달이 전문인력을 통하여 전달

되어야 할 필요가 인간유지형 서비스에 비하여 크다. 가령 예를 들어, 아동 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현재 제시되고 전달체계는 지자체의 주민생활 지원국에 ‘아동복지팀’을 두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공적부조 수급자격심사에 매달려 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바로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대 방침이 없이는 능동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민간기관의 대응전략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 체계에서 능동적이고 제도적인 서비스 체계로의 발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민간의 협력과 대응의 중요성 또한 매우 커진다 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제도적인 서비스 체계로의 발전을 위한 민간기관계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간기관들과 대학들 간의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능동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아동·가족복지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 인력의 대학 위탁교육, 대학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과목의 개발 등의 방안을 학계와 필드가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아동·가족복지 담당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와 서비스 조정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에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로 나뉘어 있던 문제 대상 중심의 그리고 전문 영역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체계에서 수급자 아동·가족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 간의 보다 효율적인 상호연계와 서비스 조정이 필수적이다.

3. 아동정책의 추진전략

이상에서는 현재 한국 아동정책의 한계를 고찰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곳에서는 현재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사후 개입적 아동서비스 체계에서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목표중심적인 아동정책의 설정과 추진

현재의 문제중심적이고, 사후대처적인 그리고 파편화된 아동정책 체계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목표에 근거한 아동중심적인 정책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아동정책은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시된 경우도 주로 투입이나 서비스 산출물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아동정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아동의 발달 결과, 즉 우리나라 아동들이 어떠한 상태로 자라나야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동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몇 억을 더 투입한다던가, 의료급여혜택을 차상위층까지 늘린다던가 하는 식의 투입과 서비스 산출물에 초점을 둔 목표에 근거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어느 아동정책도 몇 년도까지 저체중아 출생율을 언제까지 몇 퍼센트로 낮추겠다는 아동건강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궁극적인 아동의 발달결과에 대한 목표의 제시가 없는 아동정책은 각각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투입 위주 사업들의 집합체로써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그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아동의 발달 결과 목표에 초점을 둔, 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지 못한 채 공급자 위주의 사업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아동의 발달결과에 초점을 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목표의 설정은 정부, 민간단체,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는 아동 자신들의 목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는 아동의 발달결과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설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된 아동발달 목표를 포함하는 통합 아동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파편화된 아동법령 체계에서는 그러한 통합된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이룰 수는 없다. 일관성 있는 아동정책을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아동법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 통합적인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확립

현재의 파편화된 아동정책 추진체계에서는 아동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정책 주체가 없다. 비록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대부처주의의 논리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산재되어 있던 아동청소년과 가족 관련 사업들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하였으나, 그러한 부처기구의 통폐합이 통합적인 아동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동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다. 하지만, 현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조정 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통합적 정책의 제시와 이행을 주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명목상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위에 언급한 통합 아동법의 이행을 주도하고 모니터링하여 각 부처의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설 협의체 구조에서 사무국을 가진 상설기구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3) 아동정책 목표 이행의 책무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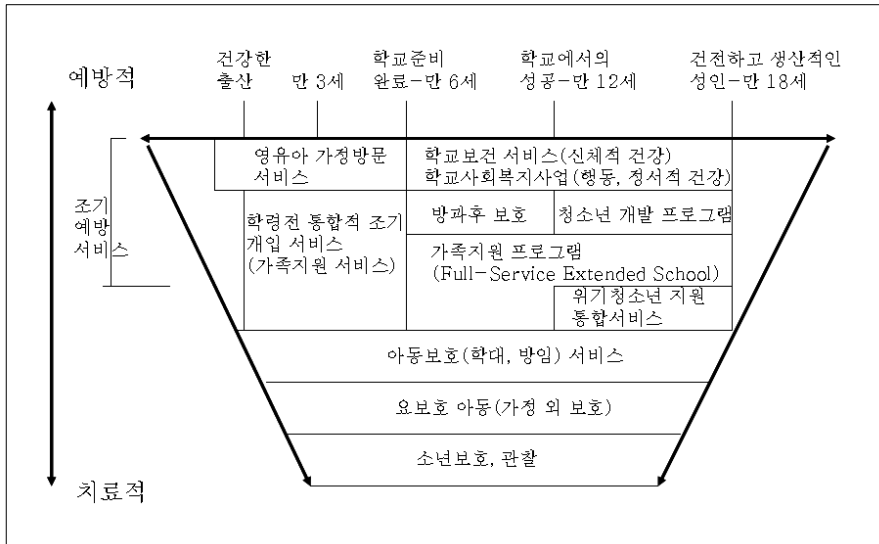
아동정책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아동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목표들이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합 아동법에서 제시하게 될 아동발달 결과에 근거한 목표들의 틀거리 안에서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각 목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위 목표의 성취는 일개 부처나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부처나 부서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표와 하위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정책 평가기획처를 두어 일관성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4) 능동적, 제도적 아동서비스 체계의 수립

아동발달 목표에 기반을 둔 능동적이고 제도적인 아동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아동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목표에 기반한 통합적 아동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에서 가로축은 연령대별(발달단계별) 목표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아동서비스를 예방적 서비스에서 치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아동발달단계별 구분은 크게 출산에서 초기발달이 완성되는 만 3세, 그리고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만 7세, 초등학교 졸업시점인 만 12세, 아동기를 마치게 되는 만 18세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발달단계별로의 발달목표는 건강한 출산, 학교준비 완료, 학교에서의 성공,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성인으로 설정되었다. 아동서비스 체계는 그러한 발달단계별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와 학교보건서비스를 바탕에 깔고 보다 치료적인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2] 능동적, 제도적 아동서비스 체계

통합적 서비스체계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방적인 체계와 치료적 체계로 설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들 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서비스 체계의 각 부분들이 아동발달 단계별로 그 역할과 기능이 설정되어야 하며 발달단계 간의 상호 연계, 조정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아동을 중심에 둔 유기적으로 통합된 서비스 체계의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 아동의 일차 양육자인 가족을 강화시키기
 -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
 -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 부모들의 자아개념과 정서적 안녕감 향상
 - 부모들의 교육 수준, 취업관련 목표에의 지원
-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 건강 그리고 영양 서비스 제공하기
 - 발달단계에 적절한 교육 환경의 제공 (물리적 환경)
 - 아동의 발달단계에 민감한 상호작용 제공 (심리사회적 환경)

- 자격있는 전문인력의 활용 (인적 환경)
- 아동 발달단계에 적합한 영양적 욕구 충족 (간식의 질, 제공되는 식사의 질 등)
- 정서·행동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특수서비스 제공
- 아동 및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하기
 -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연결
 - 교육 기관과의 서비스의 연결
 - 건강보호 서비스의 연결
-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능력 증진시키기
 - 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아동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인식 증진
 - 지역사회 기관간의 협력 증진

5) 장기적 안목의 추진전략 설정의 필요성

이 장에서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틀은 종래의 아동서비스 체계의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 틀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한번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단계적 추진 전략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단계별로 접근하여 조기 예방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그 기반 위에 개입적 서비스를 강화 연계한다.
- 예방 서비스 체계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단계인 만 6세까지의 학령전 아동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단기적으로는 최우선으로 한다.
- 보편적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나 초기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의 형태 등으로 저소득 열악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 각 부처, 영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We Start** 마을만들기, 희망스타트, 위기청소년지원사업 등)의 강화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틀을 구성하도록 한다.

Ⅲ.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

1.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과제
2.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그 대응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조화로운 만남

III.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발전과제²⁾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고유한 정책영역으로서 독자적인 틀을 구축하면서 성장해 오던 국가청소년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동정책과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좌정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8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종래의 문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선도와 보호’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육성, 보호, 참여, 권리, 복지’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물적 인프라 구축, 대학에 관련학과 설치와 전문자격제도화 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을 위시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부정책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해 왔다³⁾.

특히,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암기 및 입시위주의 주지주의 학습에 매몰되어 있는 학교에서 보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율과 참여, 모험 등 다양한 학교밖 체험활동(outdoor experience activity)을 경험케 함으로써 학교가 수행하지 못하는 잠재역량 개발을 청소년정책이 나서서 도모하였다는 것은 ‘선진인류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노선에서 보더라도 매우 현명한 정책의 실천이었다고 판단된다⁴⁾.

2) 이 글은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에서 송병국 교수가 발표한 내용임.

3) 청소년정책을 담당한 중앙부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고 있어 국가정책으로서 주변부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원화 되어 있었던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이 독립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에서도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조직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다.

4) 그간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의 성장이나 일상생활의 변화에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지만 학교(교육)나 복지, 노동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청소년

그러나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이관되면서 청소년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관련 학자, 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의 현장지도자들 모두는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향후 청소년정책이 20 여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보건복지가족부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부처주의 정신에 의해 기존의 보건정책,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과 노인정책(저출산고령화정책), 장애인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보육정책 등이 통합되다보니 청소년정책이 비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내용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의 핵심은 보건과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가운데 보호나 복지정책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부서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08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능동적 복지로 귀결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 중 청소년관련 정책은 4대 목표 가운데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의 하위 영역에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긴급현안과제, 100일 과제, 1년 과제, 임기내 과제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천 계획상에는 어디에도 청소년 관련 정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청소년계가 긴장하고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동복지정책으로 치환되는 아동정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 아동정책은 아동사회사업에서 출발하여 아동복지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연계한 총체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아동계 내에서 줄 곧 주장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칫하면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복지정책으로 환원하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가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통합은 잘 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잘못될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섭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조직을 담고 있는 상위 조직의 태생적 성격이 무엇인가도 통합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실질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지만, 차제에 아동청소년정책이 통합정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청소년계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정책과 통합되더라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과제,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그 대응,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제언 등을 다루고자 한다.

1.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과제

1) 청소년정책의 대상

모름지기 정책은 그 대상이 명료해야 독립된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그 대상이 애매모호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9-24세로 정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도 0-18세를 아동연령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연령대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중복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정책 대상이 모호했으며, 아울러 정책의 법적 근거나 집행부서 또한 중첩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한 아동보호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담당하다보니 일부 정책은 중첩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통합된 상황에서 정책대상을 명료화하는 작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고(예를 들면 6-24세), 다른 하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연령대를 나누어

정책 대상을 명료화하는 방법이다⁵⁾. 이 가운데 후자의 입장인 아동기와 청소년기 연령 구분이 의미 있고 균형 있는 정책의 생산과 집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동일 조직에서 일관성 있게 담당하는 것과 아동기와 청소년기 연령대를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기는 그 기간이 매우 길 뿐 아니라(보통6세부터 24(또는29세)), 기간 내 발달적 변화 또한 질적으로 차이가 커서 서로 상이한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 변화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분화와 구분이 더욱 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는 정보습득과정이나 사회생활양식 및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능력이나 경험, 그리고 요구 측면에서 간극이 더 넓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19세의 청소년과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8세의 아동은 사고나 행동, 그리고 자립심과 책임감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들을 같은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⁶⁾.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성인기로의 전이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취업문제, 결혼문제, 거주지 문제 등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과업을 갖게 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연령대 구분은 학자에 따라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생애주기 접근을 도입하여 완전히 자립하는 성인기 이전 단계를 크게 태아 및 유아기(utero & early childhood) 0-5세, 학령기(school-age) 6-11세, 청소년기(youth) 12-24세로 나누어 각 단계별 서로 다른 위기 요소와 가능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http://web.worldbank.org>). 그런

5) 이 경우 아동기 이전의 시기, 이른바 영유아기(0-5세)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동기로 포함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핵심정책으로 보육정책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유아기는 아동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이와 관련해서 최윤진(2000)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발달과업이나 사회적 역할과업 측면에서 의존기와 반자립기(반의존기)로서 상호간에 분명하게 질적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가 다름을 역설하고 있다.

가 하면 일본에서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계획에서 0세부터 30세까지를 통합적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되, 정책접근은 유유아기, 학동기(초등학생), 사춘기(13-18세), 청년기(18-30세)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이광호, 2008에서 재인용). 독일의 경우도 사회법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그리고 젊은 성인은 18세 이상 27세 미만 등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연령대를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아동청소년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단일조직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적절히 나누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얼버무려서 ‘생애전반기의 의존의 시기’라고 보는 관점과 달리, 아동기는 의존의 시기, 청소년기는 반의존(반자립)의 시기로 상이하게 보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에 대해 발제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육정책 대상인 영유아기는 제외한 상태에서 아동기는 학교급의 구분에 따라 초등학교(학동기)시기(7-12세)로 보고자하며, 청소년기는 중등학교시기(13-18세)와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할 때까지(19세-29세)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영유아기(0세-6세), 아동기(7세-12세) 청소년기(13세-29세)[전기(13-18세)/후기(19-29)]로 나누어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⁷⁾. 여기서 청소년기를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눈 이유는 중등학교 시기와 고등학교졸업 이후의 시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전기라 볼 수 있는 중등학교 시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라면,

7)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해야 성인기가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과 결혼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현재의 24세보다는 연장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두 개의 과업 모두를 완수하는 나이까지 청소년기를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대학졸업후 취업하는데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29세를 청소년기 연령상한선으로 보았다.

청소년후기인 고등학교 졸업이후는 성인기로 전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직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등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립을 이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2)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영역

모든 정책은 명료한 대상과 함께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둘을 통합해 보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곧 청소년정책의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년을 ‘위한다’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가능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관점은 청소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문제예방적 관점과 청소년개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문제예방적 관점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 목표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있다. 반면에 청소년개발중심 관점은 청소년을 문제와 희생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잠재성, 자산 및 자원을 가진 사회의 중요한 존재로서 성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개발중심 패러다임의 정책목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바라본다(Benson & Pittman, 2001; 김진호 외, 2004)⁸⁾.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관점과 목표는 21세기 들어 지식과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면서 보편화된 청소년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

8) 우리의 경우 청소년개발이라는 개념 대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기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정책의 목표인 것이다⁹⁾.

이와 같이 Benson과 Pittman이 주장한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Huebner, 2003; 김진호 외, 2004). 첫째 영양섭취, 다이어트, 운동, 피임, 위험행동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신체적 건강유지(physical health)이다. 둘째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조절하고, 주변의 다양한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이다. 셋째는 학교교육 및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습을 통해 기초지식, 비판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습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적 역량(intellectual competence)이다. 이는 요즘과 같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익히는 평생 학습자로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넷째는 친구를 비롯하여 주변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결정기술, 대화기술, 책임성, 헌신적 참여, 갈등해결능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이다. 다섯째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e)이다. 여섯째는 집단간 또는 개인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흥미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다. 일곱째는 자신의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e)이다.

9) 한 때 청소년기를 학교와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기도 하였으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의 등장,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성숙, 평생학습의 등장 등으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잠재능력 개발이 정규교육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이제는 ‘정규학교체제’와 ‘청소년개발’체제 두 체제가 기능적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일반화되고 있다(김진호 외, 2004).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은 그 동안 크게 학교교육,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복지)의 3 영역으로 구성되어 실천되어 왔으나 2005년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아동정책(엄밀히 말하면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일원화되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학교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생성된 행정조직에서 구안되고 실현될 청소년정책의 면모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청소년정책이 담당해야 할 영역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활동)영역과 그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육성, 보호, 복지, 보건, 노동(노동부에서 일부 다루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변두리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영역이 청소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는 분류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중요한 발전의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일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는 1987년 이전의 청소년정책과 그 이후의 청소년정책으로 나누어지며, 1987년 이후의 청소년정책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시행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특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¹⁰⁾.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최초의 종합적인 국가청소년정책이자, 각종 청소년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된 1985년의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의 효과라 볼 수 있다¹¹⁾. 해방이후 1985년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기까지의 청소년

10) 여기서의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정책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광호교수(2008)는 크게 ‘64년체제’, ‘85년체제’, 그리고 ‘선진화(08년)체제’로 구분한 바 있는데 발제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11) 청소년육성법은 기존의 청소년 관계법률들이 요보호청소년, 비행청소년에 관한 법

정책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듯이 문제청소년 중심의 단속, 선도, 보호의 정책에 불과했다. 청소년정책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법령도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아동복지법」(1981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1964) 등이 전부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청소년정책이 없었던 것이다.

1987년 11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청소년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하는 중앙부처의 전담조직으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은 종래의 단속, 선도, 보호의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육성’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다. 1993년 1월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체육부의 청소년국도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정책실로 확대 개편되어 청소년정책의 발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독립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육성 기금조성,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교류활동의 활성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반 청소년들의 여간 시간 활용을 통한 건정 육성과 보호, 그리고 사회환경 개선과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청소년정책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명칭이 바뀌고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되면서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양대 체제로 확대 개편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은 각 부처 청소년육성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 보호시책을 전담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다소 축소

를, 특정단체 위주의 단편적인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육성지도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육성을 범사회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광호, 2008참조 정리).

조정되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확대 개편되면서 청소년정책은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으로 크게 이원화된다. 그러다가 2005년 5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가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어, 비록 차관급이고 국무총리실산하에 위치되었지만 통합적으로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총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통합되면서 거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4) 청소년정책의 주요과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 진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성장, 진화 과정을 1992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된 한국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나타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마련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드러난 주요과제도 포함시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기 이전에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학교교육기능과 연계 추진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의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청소년문화활동 기반의 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증대, 청소년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의 5개 정책과제가 선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책기조는 여전히 청소년을 학생 그리고 미래의

주역으로 보았으며, 선호, 보호, 교화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청소년기를 미래를 위한 준비기로 바라보는 등 전통적인 청소년육성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더불어 1차 5개년계획은 청소년육성정책이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양적 증가와 함께 93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소년전문지도자로서 국가자격제도인 ‘청소년지도사’제도를 시행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

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여전히 보호·선도·교화에 그쳤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 ‘학생’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출발하였다. 따라서 1차 5개년계획과는 달리 동반자적 청소년 지위부여, 소수 문제 청소년 보호 위주에서 다수청소년 육성정책 시도, 청소년을 정책대상에서 정책파트너, 참여주체로 인식 등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5개 정책분야 20개 과제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5개 정책분야는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등이었다. 이러한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뚜렷한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정책의 주체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들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려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의 확충,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수련 프로그램개발과 보급, 청소년보호대책 활성화, 청소년복지지원 및 고충상담체제 구축, 청소년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확대, 청소년육성 재원 확충 및 법령 정비 등의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차 5개년 계획은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거나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는데 조직상 한계가 있었다.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 삶의 실제적 변화와 청소년관련 현상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특히, 기존의 1, 2차 5개년계획과는 달리 참여, 소통, 체험이라는 기본 이념을 상징하고, 새롭게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파트너십 등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3차 5개년계획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 과제는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구축,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등으로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참여기회 확대, 창의적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과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그리고 청소년행정조직의 개편과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아카데미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추진, 청소년행정체계의 일원화,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연례화, 비학생을 위한 청소년 할인제도(청소년증) 도입, 청소년 관련법의 개정 추진, 청소년특별회의 시행 등 청소년정책이 국가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활동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 부족,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의 미흡, 극소수의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미흡, 중앙 청소년정책의 지방 전달체계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새정부의 등장으로 청소년정책 행정조직이 바뀔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계획으로 남기는 했지만, 2007년도에 마련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국가의 청소년기본정책의 공과분석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적 전략을 담은 계획이므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본다.

4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의 변화로써 청소년역량강화의 필요성 증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대비한 청소년활동기반 강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증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다양한 활동경험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해요인 증가 등을 제시하면서 사회투자 관점에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와 소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을 핵심 정책이념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과학화, 네트워크화, 지역중심화, 일상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선택하였고,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복지 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정비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5개년계획들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를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번째 영역인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정비에서도 청소년지원 인프라 보강을 주요 과제로 선택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I-1〉 청소년 육성 5년 계획별 정책과제

주요정책과제	4차 5개년 계획(2008~2010) ¹⁾			
	1차 계획(1993~1997) ¹⁾²⁾	2차 5개년 계획(1998~2002) ³⁾	3차 5개년 계획(2003~2007) ³⁾	4차 5개년 계획(2008~2010) ⁴⁾
청소년 정책과제	1.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2. 청소년보호 및 선도 3.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4. 청소년교류 확대 지원 5. 국민참여예산 및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계 구축 3.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4.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5.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1. 청소년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3.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4.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5. 추진체계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1.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2.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3.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1-1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1-2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해결 지도	1-1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1-2 청소년의 자생·자율활동 지원 1-3 공동체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의 생활화 1-4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1-1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1-2 청소년 시민·자치권 향상 1-3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1-1 청소년활동·성취 지원 1-2 청소년 참여와 직업역량 개발 1-3 다문화·글로벌 역량 함양
	2-1 어려운 청소년지원강화 2-2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2-3 비행청소년예방과 제도	2-1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확충과 운영 활성화 2-2 특성화·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2-3 청소년단체의 자율화·자기특성화 및 열린 운영	2-1 청소년활동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2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2-3 청소년활동 지원 및 특성화·다양화 2-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2-5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문화 진흥 2-6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2-1 청소년 인권 및 건강·안전 증진 2-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2-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3-1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2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단체 육성	3-1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함양 3-2 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3-3 남북청소년 교류 기반조성 3-4 청소년의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3-1 청소년 사회진출 연계 서비스 추진 3-2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3-3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3-4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3-1 청소년 건전 생활환경 마련 3-2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3-3 청소년 성보호 강화
	4-1 청소년국제교류 지원 4-2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4-1 청소년상담활동의 강화 4-2 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4-3 장애청소년의 자활 지원 4-4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4-1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4-2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 4-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4-4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성비행 대책 추진 4-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4-1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4-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세부정책과제	5-1 청소년육성정책 홍보 5-2 청소년 육성 추진체계 강화	5-1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5-2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5-3 문제 청소년 선도 예방 5-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정화	5-1 청소년 관계 법령 및 조직 정비 5-2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5-3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 5-4 범국민적 참여 확산	

12) 참고자료 : 1) 함병수 외(2000). 제2차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2)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3) 문화관광부(200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4)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추진되었던 과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보호와 복지중심의 아동정책과는 달리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외된 청소년들의 보호와 복지, 두 기둥 아래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환경 개선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인권, 참여, 권리 확대와 점점 더 유해해지는 그들의 성장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졌다.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고,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갈수록 청소년기의 역량이 강조되는 반면, 청소년 역량개발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과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에 청소년정책의 책무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변화와 그 대응

1) 이명박정부의 정책노선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고, 이는 꿈이 아니라 현실의 힘으로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사람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발전(경제살리기)’과 ‘통합(국민통합)’에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연계되고, 기여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인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섬기는 정부(정부기능과 조직 개편,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활기찬 시장경제(30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 능동적 복지(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등), 인재대국(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성숙한 세계국가(적극적 외국인 정책, 다문화가족 포용, 국민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 등의 ‘5대국정지표’가 193개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정책이 담아야 할 과제로는 일차적으로 능동적 복지 영역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국정지표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른바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적극적 외국인 정책, 다문화가족 포용, 국민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이 그 예이다.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조장하되,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을 정책적으로 별도로 배려하는 추세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193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해 보면 길으로는 청소년정책으로 포장되지 않았지만, 향후 청소년정책으로 포함시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이를테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 될 ‘희망복지 129센터’ 과제는 보건, 복지, 고용이 통합된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청소년 또한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과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같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을 청소년 사회역량 개발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 가능하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의 경우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청년리더가 되려면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글로벌 인재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 내의 교육과정에서만 실천하기는 어렵고, 학교 밖의 청소년정책이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 도

입 역시 현재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도록 구안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들의 교육적 경험을 지원·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대상 역시 미진학 청소년이나 미취업 청소년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향후 중시되어야 하는 아젠다이다. 외국인 청소년이나 그들의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나 스포츠클럽 육성 모두가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이다. 청소년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재개발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정책은 과거보다 더 정책적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청소년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역량개발과 소외집단의 기회균등에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실용정부의 코드와 부합된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전과 정책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께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정책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목표아래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제시한 긴급현안과제, 100일 과제, 1년 과제, 임기내 과제 어디에도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청소년계는 지난 20 여년 동안 추진해왔던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쌓여있다.

조직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래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정책과, 권리과, 역량개발과, 교류과)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복지과, 상담자활과, 보호과, 매체 환경과, 성보호과)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수행하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아동정책과 통합했을 뿐 다

를 바 없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의 보건과 복지중심 부서의 성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분명히 조직구조상 청소년 관련 실이 존재하고, 9개의 관련 과가 있는데도,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대부처로 탄생한 이후 대통령에게 행하는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지 않았음은 보건복지가족부내에서의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잘못 통합 또는 이관되었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세우고 있는 ‘능동적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청소년정책이 강조해 왔던 청소년역량개발을 비롯하여 활동, 진로, 노동, 보호, 복지 등이 고르게 강조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모두가 주시하다시피 복지 앞에 ‘능동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기존의 잔여적 복지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복지로의 복지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대 국정 지표 가운데 하나인 ‘능동적 복지’ 개념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능동적 복지의 개념은 복지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함을, 복지를 소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그리고 빈곤과 질병에 대한 사후 보장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맞춤형 복지로 전환함을 뜻한다.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 복지로 이해할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만이 그 대상이 아니며,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심의 해결이나 보호가 아닌 그들 스스로 자립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가청소년정책에서 강조해 왔던 역량개발이나 활동, 참여, 권리 등이 그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정책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강조하고 있는 7대 핵심 정책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대응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공은 이러한 청소년정책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3) 아동정책의 발전과정

아동정책은 그 핵심이 아동복지정책이다. 아동복지정책은 1950년대 복지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아동사회사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동사회사업이 시작될 당시 국가전체가 빈곤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요보호 수준의 아동들이 매우 많았고 아동사회사업은 마땅히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정책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정책의 근간이다. 물론,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이 국가의 의무로 다가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단순한 생존과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발달, 참여에까지 확산되어야 함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의 현실은 생존과 보호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아동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후반기 들어 사회투자 관점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시작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전생애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아동복지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였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참여정부가 시행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아동발달계좌(CDA),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에 대한 바우처(voucher) 제도 등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및 보편적 서비스 관점으로 아동복지정책을 이끌어가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아동계의 많은 학자들은 아동정책이 이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대처적인 “기본생활보장” 성격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 성격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익중(2007)은 참여정부에서 아동정책(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요보호 아동 보호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투자, 사후대처적 접근에서 조기에방적 접근으로, 분절적 서비스체계에서 통합적 서비스체계로, 그리고 기관중심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각각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아동사회사업에서 출발하여 아동복지정책으로 한정되던 아동정책이 이제 그 대상이나 정책내용에 있어서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음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담겨진 정신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청소년정책과 조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조화로운 만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과거에 서로 어떤 길을 걸어왔던 간에 이제는 만났다. 그리고 두 정책이 하나의 ‘아동청소년정책’으로 통합되었다. 원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전략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시너지 효과는 커녕 갈등과 반목, 그리고 혼란만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조화로운 만남을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각각이 추구하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간에 ‘다름의 인정’과 ‘같음의 공유’가 지혜롭게 발휘되어야 한다.

1) 통합의 전제조건

먼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질적으로 상이함을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두 시기가 중첩되고 있으므로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 모두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는 두 정책간에 ‘힘겨루기’ 양상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모두 중요하며, 서로 다른 발달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 연령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동기는 초등학교 단계로, 청소년기는 중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전기와 고졸이후에서 성인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청소년후기로 나누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정책부서의 일원화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두 정책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듯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출발이 서로 상이하다. 이를테

면 아동정책은 아동사회사업에서 출발하여 아동복지로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강하다. 물론 아동학자들이 발전적으로 아동정책도 아동의 복지나 보호에서 벗어나 발달과 권리, 참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오늘날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청소년권리와 참여, 청소년복지와 보호, 청소년상담, 대안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국에는 이미 수많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들 기관에서 일할 전문가를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오래전부터 양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두 정책 간에는 고민도 서로 다르다. 현실적으로 아동정책은 환경개선이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이 고민의 주 내용이지만,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효과적인 활동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고민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은 복지나 보호정책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강조하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포괄하면서 적극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역량개발까지를 담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복지와 보호를 뛰어넘는 교육, 노동, 복지, 보건, 진로, 활동 등이 어우러진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경상(2008)은 아동청소년정책이 보육, 보호, 복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명실 공히 국가의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여성부를 제외한 정부중앙부처 조직이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영역으로 분류된 까닭에 그동안 청소년정책이나 아동정책은 여럿의 관련부처에서 맡아 시행해 왔다. 그러다보니 이들 정책은 어떻게 하면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안고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두었던 것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주무 부처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2) 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아동청소년정책이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인 일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정비
- 국가의 중장기 아동청소년정책계획 수립
-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조정 관련 기구 마련: 협의회? 위원회?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와 논의
-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명료화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전담공무원 제 도입
- 질 높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보급과 효과 검증
-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역량 강화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확대
- 정부의 평생학습계좌제에 대비한 「아동청소년학습계좌제」 준비
 - : 현 CDA확대 개편

IV.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과 발전과제

1. 청소년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
2. 생애전기통합형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

IV.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¹³⁾

한국사회는 2007년 말 1인당 국민소득 2만 70달러로 2만 달러의 벽을 넘었다. 이제 3만 내지 4만 달러 달성을 향한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가고 있다. 선진국 진입의 시대적 과제는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87년 체제’로 대변되는 민주화 과정을 넘어 새로운 ‘08년 체제’의 형성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선진화는 이 시대 국가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난 6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변화’를 통한 ‘발전(경제 살리기)과 통합(사회·국민통합)’을 국정운영 이념과 철학의 양대 핵심으로 하고,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선진화를 위한 시발로 정부조직을 대부분 통합 원칙에 입각하여 개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보건·건강정책,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과 노인정책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정책, 장애인정책,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한 부처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통합되고, 보육정책과 아우러져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생애 전기(前期)를 통합¹⁴⁾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13) 이 글은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에서 이광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임.

14)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3세대 사회에서 4~5세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청소년정책에서 기존의 연령 분리적 접근(age-separated approach)에서 연령 통합적 접근(age-integrated)을 제안하고 있다(참조: UN, 2005). 4~5세대 사회를 가정할 때, 출생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기까지(영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를 생애 전기, 30~40대(생애 중 전반기), 50~60대(생애 중 후반기), 70대 이후(생애 후기)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 생애 전기는 출생(의존)에서부터 청년기(자립)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사회적 낙오자가 일자리를 통해 사회 주류로 복귀하는 “일하는 복지”,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 투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장관 인사말 중에서)’을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투자정책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투자론적 정책 관점¹⁵⁾ 또한 아동청소년정책에는 새로운 환경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살리기와 능동적·예방적 복지정책은 시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의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고,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앞날도 그다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미국 발 경기침체 및 달러 약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외 금리차 확대에 의한 금융 불안이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이인실, 2008). 일본의 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의 악몽을 되새길 정도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참조: 이지평, 2008). 이러한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가능성과 한국 경제의 불안 조짐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 구조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의 청사진도 이러한 환경적 기반의 변화 즉, 국가비전으로서 선진화, 한국 경제의 침체 조짐 그리고 생애 전기의 포괄적 정책 추진 기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과 특성은 물론 현재 한국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랜 미국생활을 접고 2003년 삼성전자에 영입돼 해외 마케팅 업무를 총괄해온 이현정(2007: 38-47) 상무가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진단한 한국사회의 한

15) 사회투자국가론, 혹은 사회투자론적 정책 관점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주요 사회정책 관점으로 채택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경제와 사회정책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바 있다. 새 정부 역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일하는 복지 등 사회정책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제3의 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투자국가론은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편, 2006 ; 임채원, 2006 ; 김연명, 2007 ; Oik, 2006). 청소년분야에서도 2007년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광호, 2007a ; 문성호, 2007).

계와 가능성을 토로한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최하위권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이 말이다. …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한국 젊은이의 DNA가 바뀐 것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단 목표를 정하면 오로지 그것 하나에 매진하는 피땀의 결과다. … 지난 5년 동안 나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다. “양과 겹질 한 겹만 벗기면 한국은 여전히 농경사회다.” 겉보기엔 인터넷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것 같지만,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농경사회와 다르지 않다. 여전히 집단 공동체 의식구조와 수직적 위계질서가 사회문화 코드의 핵을 이룬다. …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이런 사회문화 코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농경사회적 가치관은 비보이의 성공을 가져다줬지만, 구글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기업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면,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이다. 창조적 자기파괴가 필요한 시기다. …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유전자 개조가 필요하다.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 … 나는 요즘 위기의식을 느낀다. 암초를 향해 가는 배를 보는 듯하다. 충돌하기 전에 방향타를 돌려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암초와 가까워질수록 더 큰 폭의 코스 수정이 필요하고 그만큼 어렵다. 설사 충돌직전에 가까스로 배가 방향을 튼다 해도 갑작스러운 선회는 많은 사람을 물에 빠뜨릴 것이다. …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정책과 사업도 지금까지와 다른 창조적 자기파괴를 동반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영역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청소년 지도·육성·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시행’으로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격상되어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지평을 확대하며 공공행정의 한 분야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1987년 11월 ‘청소년육성법’이라는 청소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는 청소년정책과 사업 시대를 열었다.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활동의 중심의 고유영역의 ‘정부영역화(Governmentalize)’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1984년 10월 정부계획으로 ‘청소년문제 개선종합대책’이 마련되고, 1985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청소년문제 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확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25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해왔다. 청소년시설 등 물적 인프라의 확대는 물론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학과의 독자적 개설 및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제도화 등 인적 인프라의 양적 확대는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는 5가지의 직접적인 청소년 관련법령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초압축 성장’은 한국사회의 산업화(이른바 73년 체제)와 민주화(이른바 87년 체제)라는 시대적 변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눈부신 초압축 성장은 수요자인 청소년과 부모의 일상에서 체감과 지지정도, 각종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정도 등 운영체제 면에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압축 성장’ 뒤의 어두운 그림자는 선진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적 의미나 과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정책 분야의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정책과 사업에 요구하는 시대적 의미와 과제는 지금까지 ‘초압축 성장’ 과정에서 지향했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새 정부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는 지난 세월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한 자부심과 함께 변화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틀짜기 원리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청소년을 옥죄고 있는 학교교육과 입시제도 및 사교육 등의 현실을 맥없이 비껴가거나 힘없이 바라보고 탓하기에 앞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참조: 윤태익, 2005)’,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기의 고통과 의미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은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변화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주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새 정부의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는 생애 전기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의존에서 자립까지의 포괄적 성장지원 체계)의 재설계라는 입장에서 제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이후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변화과정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지난날의 성찰은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추진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방식을 탈피하여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커다란 단계구분을 시도한다. 왜냐 하면 정책추진기구 변화 중심의 성찰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변화를 자칫 또한번의 단순한 추진기구의 변화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제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바탕위에 이 글은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변화가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의미에 걸맞은 재설계의 원리와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1. 청소년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

1) 64년 체제'와 '85년 체제' 형성과 특성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정부영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61년 군사정변과 1963년 12월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열린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함께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청소년대책에 착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른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64년 체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1979년 12.12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0년 8월 11대 전두환 정부의 출범에 이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1985년 3월 '청소년문제 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청소년정

책과 사업의 ‘85년 체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이광호, 2007b ; 2008a).

한국사회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변천과정에서 ‘64년 체제’는 해방 이후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청소년문제에 대한 부분적 대응을 벗어나 청소년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과정에서 관련행정기관과 단체와의 연락, 조정과 청소년 보호·육성과 관련된 범국민운동 전개나 시설 및 단체 지원 등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즉,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의 달 지정, 청소년백서 발간,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응 등 정부영역에서 청소년사업의 기초적인 공공행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64년 체제’의 정책적 핵심 관점은 일부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선도와 보호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려는 후견적 입장, 청소년의 의사능력과 분별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연령 미달자는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보호적 입장, 성장 면에서 심신의 발육이 온전치 못한 청소년에게 특정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사회활동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참조: 이철위, 1994:116).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는 일부 문제청소년의 단속과 보호 및 요구호(要救護) 아동의 복리 증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64년 체제’의 형성은 이미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청소년문제에 대한 선도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의 형태로 잉태되고 있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군사정부에서 구법령 정리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지만,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¹⁶⁾을 설정하고 있다. 아동복리법 역시 1923년 제정된 ‘조선감화령(朝鮮感化令)’을 폐지하고, 특정한 구

16) 일제하에서 제정·시행되어온 ‘미성년자각연금지법’과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대치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은 제정되었다. 따라서 미성년자보호법은 양법을 통합 규정하고, 동시에 미성년자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등에 출입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동숙을 금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임하거나 하게 한 친권자, 영업자 등을 벌하게 하는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참조: 내무위원장, 1961, 법안 제안이유).

호(救護)가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¹⁷⁾.

그런데 1970년대 접어들면서 청소년문제나 비행의 확산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한 청소년 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1970년 11월 구태회 의원 외 18인에 의해 제안된 ‘청소년보호법(안)’으로 잘 표출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안)¹⁸⁾이 비록 최초의 청소년관련 법으로 성립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양적으로 급증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은 충분한 규제력을 갖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범인성 환경을 규제 정화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을 양양함으로써 건전한 보호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부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단속 및 보호의 사회적 요구는 결국 1977년에 정신계발, 건전지도, 직업훈련, 복지후생, 교정교도 등 5개 부문의 총167개 사업을 수록한 계획이 수립·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시책에 대한 청소년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이 더욱 절실했기에 따라 특정 부처인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1977년에는 청소년정책 추진기구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소년대책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국

17)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참조: 문교사회위원장, 1961, 법안 제안이유).

18) 당시 청소년보호법(안)은 첫째,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둘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문제 국가대책회의’를 매4년마다 개최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청소년대책심의회를, 시도·시군에 지방청소년대책심의회를, 동리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게 하고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도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단체나 개인이 사업할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보조를 할 수 있으며, 청소년선도 사업에 기부행위 한 자에게 조세나 공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하고, 특히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섯째, 문서, 도서, 간행물, 공연물, 완구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공연업자 등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구태회외 18인, 1970). 청소년보호법(안)은 가결되지 못하고 1971년 6월 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청소년 관할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정부영역 전반의 종합적인 행정 추진체계를 갖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접어들어 전두환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적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과외금지 조치(1980년 7월), 통행금지 해제와 중고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1982년 1월)등의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특히 청소년문제가 일부 문제청소년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어가는 일반화 추세에 주목하는 등 청소년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고생 두발 및 교복자율화’ 등 유화조치와 맞물려 일반 청소년의 디스코클럽과 맥주홀 출입과 화재 사건¹⁹⁾ 등으로 청소년대책이 일부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응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책이 다수 일반 청소년에 대한 사전예방과 건전 육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 학생범죄의 증가와 소년 강력범의 급신장 등 청소년비행의 강력, 폭악화 현상의 심화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존의 문제별, 부문별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청소년대책위원회, 1985:85)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져 청소년대책은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에서 종합대책의 입안과정, 추진체계, 대책의 내용 및 사업범주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청소년문제대책반’이 구성되고 1984년 11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이 확정(청소년대책위원회, 1986:85-86; 청소년대책위원회, 1985:35-36)되었다. 청소년

19) 1983년 4월 18일 대구의 향촌동 디스코홀 화재로 인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대량 사망하고, 사망자 대부분이 학교에서 모범생이라는 충격으로 나라 전체가 침통한 반성에 빠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84년 2월 3일 서울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으로 다시 청소년들이 몰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민주정의당에 각각 청소년종합대책반이 설치(참조: 조영승, 2002:11)되었다.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청소년문제대책반’이 구성되고, 1984년 11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이 확정(청소년대책위원회, 1986:85-86; 청소년대책위원회, 1985:35-36)되기에 이르렀다.

년문제개선종합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부처별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한 후 당시 학계, 언론계, 교육계,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문제 관련 전문가 약 100여명의 면담결과가 반영된 총 8 부문 176 사업이 포함된 ‘청소년문제 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1985년 3월 20일²⁰⁾)’이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시행되었다.

- 20) 청소년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참조: 청소년대책위원회, 1985:36-44)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을 보면, 정책방향은 크게 문제대응 중심에서 건전육성사업 중점추진으로, 사후교정보다 사전예방을 강조하고, 정서적·문화적 공간 제공, 민관의 세습화 방지 등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이용시설 확충과 활용,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육성, 청소년문화 및 체육진흥,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를 골격으로 하는 ‘청소년건전육성부문’을 필두로 한 8개 부문의 틀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가정문제 상담사업 강화 등의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지도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기능 강화’, 학교외 청소년을 대상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근로, 농촌, 무직·미진학, 불우, 비행청소년 등 5개 대상으로 나누어 총괄부처를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학교외 청소년 보호·육성’ 등이 있다. 그 외에 ‘청소년 유해사회환경의 정비’, ‘비행청소년의 선도·교화’, ‘청소년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환기’, 그리고 청소년대책기구의 강화, 청소년관련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정, 청소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청소년대책추진체계의 강화’ 등 이렇게 모두 8개 부문이다. 1985년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서 제안된 과제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을 내용, 범주, 추진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일차적 과제가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처음으로 청소년시설 확충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시 청소년의 정서적·문화적 공간 마련을 위해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시설(청소년야영장, 자연학습원, 심신수련장, 청소년회관, 학생교육원, 학생과학관)로 하여 대대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및 활용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지도와 상담 등 청소년사업 인력의 확보와 전문화를 위해 자원인력 활용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기존에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양성해오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연수확대 계획을 세웠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가정문제 상담사업 강화와 공립아동상담소 확대 등과 함께 상담요원 전문화를 위해 신규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퇴직교육공무원과 가정주부 중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85년에 서울에서부터 ‘학부모상담자원봉사제’를 도입 실험·운영(청소년대책위원회, 1986:89)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은 사업 과제와 내용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 범주와 추진내용에서 각 부처

소위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85년 체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85년 체제’는 과거 일부 청소년 문제대응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수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후교정보다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정서적·문화적 공간 제공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64년 체제’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85년 체제’의 주요 정책이념과 목표는 대다수 일반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건전 육성과 보호 및

의 청소년관련 정책과 사업을 망라한 종합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세부추진계획은 총 8개 부문으로 청소년활동, 시설, 단체, 지도자, 국제교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부문을 핵심으로 하여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부문,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학교외 청소년 보호·육성 부문 및 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기본 내용 틀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가 정비 내지는 강화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 청소년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행정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청소년대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밑에 국장급의 청소년전담관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1985년 1월 1일에 ‘청소년대책심의관’ 제도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에는 당시 늘어나는 청소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청소년전담과 설치를 소요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군·구에도 청소년대책 관련 전담인력 배치를 계획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985년과 ‘87년 사이에 시·도에 한 단계 낮은 청소년계 신설(1985년 7월), 시·도 교육위원회 청소년전담 장학사 배치(1986년 2월), 소년범죄 전담반 설치(1987년 7월) 등으로 청소년대책 관련 일선행정조직이 강화(청소년대책위원회, 1987:44)되었다. 아울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소년대책심의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청소년대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기능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한편 청소년종합대책 추진체계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관련 법령 제정과 청소년연구·조사기관의 설립이 계획되었다. 먼저 당시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육성기본법’의 제정(청소년대책위원회, 1985:43)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종합대책의 법제정 계획은 1987년 법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으로써 한국사회 최초의 청소년관련법령을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대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성향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 사업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의 장기적 과제로서 청소년문제연구소의 설립 방안도 검토하였다. 청소년문제연구소 설립 역시 청소년육성법 제정시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반영되어 1989년 7월에 발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환경 개선과 여건조성으로 대변된다. 기존의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자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으로 나약하지만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일반 대다수 청소년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한다. ‘85년 체제’ 형성 또한 1980년대 초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1981년 4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 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정부, 1981:1)할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되었다. 이러한 ‘85년 체제’의 정책이념과 가치는 1986년 12월 당시 민주정의당 청소년대책반 김정례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발의되어 1987년 11월에 의결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²¹⁾.

‘85년 체제’는 일부 문제청소년만이 아니라 대다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과 학교 기능의 강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 환경 개선과 함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과 교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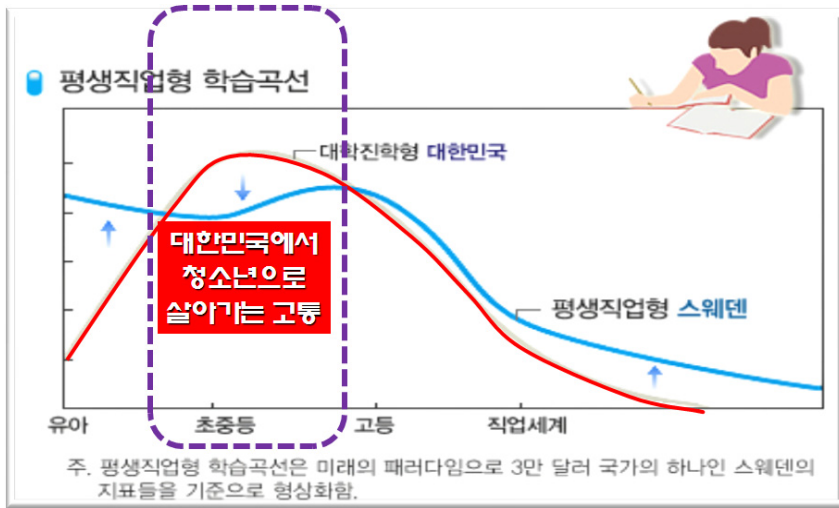
21) 당시 청소년육성법은 ‘기존의 청소년 관계 법률들은 요보호 청소년, 비행 청소년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 단체 위주의 단편적인 법률뿐으로 건전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육성지도에 대한 일반법률이 없으며,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한 재원의 부족, 청소년 지도행정의 종합적 기획성과 일관성의 부족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 지도육성을 범사회적으로 활성화(김정례 등5인외 47인, 1986, 법안 제안이유)’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청소년육성법안은 1986년 12월 17일 제안되고, 1987년 10월 상정되었으나 당시 문교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한국청소년연구원 특수법인의 설립에 따른 법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고, 청소년 장단기 종합계획으로 기간이 불분명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필요 등의 문제점 지적(국회 문교공보위원회, 1987)으로, 본안은 대안폐기하기로 하고, 대안이 1987년 10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내용으로 이어져 왔다. ‘85년 체제’의 이념과 가치 및 내용은 1988년 청소년 육성종합계획을 거쳐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 큰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생활현실과 ‘08 체제’ 형성 가능성과 방향

2000년대에 접어들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생활현실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못지않게 10대와 20대의 생활여건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이대로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에 의한 포디즘(Fordism)이 종언을 고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시대로 돌입하는 동시에 주요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와 인재양성의 논리도 함께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림 IV-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과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비교우선 [그림 1]의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은 짧은 청소년기에 지나친 학업부담을 안고 생활한다.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숨막힘과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살아가기’를 외면하거나 비켜가는 아동청소년정책은 그 존재의 의미 확인은 커녕 아동청소년과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그림 IV-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과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비교

또한 현재와 같이, 자녀를 낳아 결혼하여 독립시킬 때까지 장기간 부모가 돌보고 뒷받침하는 막대한 사적 부담을 지속할 경우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립과 세대독립은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 늦다. 젊은 세대의 평균 입직(첫 취업) 연령은 25.0세로 프랑스 23.2세, 미국 22.0세, OECD 평균 22.9세에 비해 턱없이 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퇴직 연령은 EU 국가의 60.8세 비해 56.8세로 매우 이르다(참조: 통계청, 2006). 한국사회는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찍이 물러나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노동을 통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교육에 투입되는 개별가정의 부담 비율은 선진각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40~50대 세대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고령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온전히 국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양육비와 결혼 비용 등 자녀에 대한

개별 가정의 투자비용은 일반 국민들의 부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양육비는 2003년 1억 9,871만원에서 2006년 2억 3,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참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2007). 또한 청소년의 대학진학율은 82.5%로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최근 1000만원 시대(참조: 경향신문, 2008.1.29 ; 1.30 ; 2.1 ; 조선일보, 2008.3.18)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최초로 공식적으로 조사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사교육비는 20조에 달하며, 사교육 참가율은 평균 77%,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66.4만원에 이르고 있다. 소득 차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최대 8.8배 차이가 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값 비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 비용조사(좋은만남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7)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평균 결혼비용은 1억 7,245만원으로, 이중 70% 정도가 신혼집 마련으로 1억 2,260만원, 혼수 1,345만원 등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 직장인 생애소득은 상위 40% 수준이 11억원, 하위 40%는 4억 7,000만원 정도이며, 55세 퇴직 경우 평균 8억 8,250만원, 59세 경우 10억 1,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류이하의 일반 가정은 자녀 2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하여 독립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1955년~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45~53세)는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퇴직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35.1%가 401만원 이상으로 높았지만,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에서 30대나 60대에 비해 40대(4,943만원), 50대(4,620만원)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자금 비축규모는 29.8%가 비축은 없고 부채만을 안고 있으며, 27.5%가 5,000만원 미만으로 답해 절반 이상의 부모세대가 노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경제, 2008.2.14).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는 대다수 아동청소년이 지나친 학업 고통으로 에너지와 꿈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 사회적 자립은 커녕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도 점차 상실해가는 사회, 한편 부모세대는 지나친 자녀 사교육과 양

육비용으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꿈과 희망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빈곤과 같은 전통적 위험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세계화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의한 일시적 낙오와 이탈은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배제로 귀결될 수 있다. 최근 10대와 20대의 독립 지체를 다루어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88만원세대’(우석훈·박권일, 2007) 저자들은 ‘20대 독립’이 불가능한 사회는 그만큼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꼭 막혀있고,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장치들을 갖추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의 독립을 지체시키는 비효율적인 사회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퇴행적 성인의 등장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고 다소 강하게 경고한다. “10대 후반에 독립하고 동거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선진국의 10대와 지체 현상 속에서 종속된 존재로서 어둡게 20대 초반을 맞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립을 지체시키는 요소들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 방도가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시민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컴퓨터와 핸드폰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과몰입과 과소비, 그리고 10대와 20대를 주 대상으로 한 상업적 마케팅은 젊은 세대에게 주체적 소비를 권장하며 그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자립을 지체시키는데 적지 않게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일자리 부족에 의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길목에서 지체시키고 있다.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주거나 학비 지원, 가족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적 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재기 기회 및 빈곤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는 젊은 세대의 세대독립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 젊은 세대가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세대 독립이 계속 지체된다면, 이는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가 독립하여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의무 지체는 물론 세대 미형성으로 인한 저출산, 부모 세대의 과잉 부담으로 인한 노후 대비 부재 등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독립 지체로 인한 세월을 현재와 같이 일종의 ‘지나치게 억압된 교육적 관리(?)’나 혹은 사회적 배제나 방임 상태로 놓아둘 경우가 또한 커다란 사회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표 IV-1〉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향후 방향

	64년 체제	85년 체제	선진화(08년 체제)
정책 이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자립(自立)과 시민성(共生)지원
정책 과제	일부 문제청소년의 단속과 보호 및 요구호(要救護) 아동 복지 증진	다수 청소년의 여가시간 선용과 청소년활동 참여, 환경과 여건개선 및 일반 아동 복지 증진	출생(의존)에서 창년(자립)에까지 자립과 시민적 역량 강화 및 기회(재기의 기회) 확대 등 포괄적 지원
청소년 인식	위험한 아이들 끌치 아픈 아이들	나약한 아이들 위험스러운 아이들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	청소년의 자립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사회에서 정신적, 경제적 자립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
청소년 연령	0~24세	12~24세(85~87년) 9~24세(87년 이후, 청소년육성법 규정)	0~24세(18세 혹은 29세) ※24세 의미를 되짚고 전략적 고려 필요
주요핵심 정책영역	청소년 문제영역(비행, 문제행동 단속, 보호) 중심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활동, 보호, 복지)중심	아동청소년 일상생활영역 (고유영역+교육,노동,보건,복 지,비행 등) 중심
주요관련 법령제정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아동복지법(1961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 (1964년)	아동복지법(1981년 법명칭개정) 청소년육성법(1987년) 청소년기본법(1991년)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주: 1984년과 85년에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1984.11)’과 ‘동 대책 세부추진계획(1985.3)’이 발표되고, 그 계획에 따라 1986년 12월 당시 민주정의당 청소년대책반 위원장 김정례 의원 등 5인외 47명 의원 명의로 발의된 청소년육성법안에 대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1987.10)는 청소년연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해놓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청소년을 0세부터 24세까지로 하여 모든 통계치를 집계하여 왔으나, ’85년도에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대학생 및 동일 연령층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보호와 육성 시책을 펴오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12세 이상 24세 미만인 그 기준이 되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백서도 제반 통계치도 전부 이 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고 제6차 5개년계획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안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로 낮출 경우 그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모든 통계와 시책상 폭넓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국회 문교공보위원회, 1987:5-6)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사람 논리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성인을 양산해내고, 성인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한 젊은 세대의 출현은 일본이 우려하는 일종의 ‘하류사회’(미우라 아츠시 지음, 이화성 옮김, 2006)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아동청소년정책과 사업은 과거 젊은 세대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청소년활동 기회 제공이나 뒤쳐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질을 뛰어 넘어 젊은 세대의 세대 독립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성을 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나친 교육적 관리과 억압으로 이미 열정과 에너지를 탈진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양산되지 않도록 근본에서 다시 고뇌해야 한다. 무엇이 우리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 시대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의 본질,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이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창조적 자기 파괴의 출발이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의 선진화는 아동청소년의 보육, 교육, 보건, 복지 등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연계하여 젊은 세대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생적 역량을 준비하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한편으로 자칫 뒤쳐지는 젊은 세대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²²⁾가 시급히 요청된다. 아동청소년이 출생하여

22)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1세기에 접어들어 아동,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통합적 큰 틀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대표적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青少年育成推進本部, 2003 ; 内閣府, 2007)의 경우 0세부터 30세까지를 통합적 정책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계획 속에 담고 있다. 즉, 30세 미만의 정책 대상을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청소년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는 셈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특히 어려운 청소년지원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접근은 연령별로 세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즉, 유아기, 학동기(초등학생), 사춘기(13-18세), 청년기(18-30세)로 통합적 세분화로 대상 구분을 하고 있다. 핀란드(Ministry of Education, 2007)의 경우, 청소년사업에 비중을 둔 청소년 추진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2006년 청소년법을 제정하면서 청소년 정책적 성격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 범주를 29세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온 국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낡은 철학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을 사회적 참여와 인정의 총체적 정책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쟁을 1960년대에 거치고 있다(참조: Nieminen, 1997). 반면

일찍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생애 전기 통합형 사회적 지지체계’를 재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생애전기통합형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

1) 따뜻한 생애 전기 통합형 지지체계 재설계 원리 : 플랫폼 원리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차적으로 기존의 아동정책과 융합하고, 보육정책과 아우러져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생애 전기(前期)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차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직결된 보건·건강정책,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과 장애인정책이 아동·청소년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라는 한 부처에서 수행하는 조직적 환경을 만들었다. 따라서 생애 출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동보육(0~5세)을 비롯하여 각 연령 단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이념과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생애 전기를 가로지르

영국은 아동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영국의 경우 18세까지의 아동정책의 큰 틀에서 청소년사업의 대상은 크게 11세에서 25세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집단은 13세에서 16세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고든 브라운 수상은 새로 집권하면서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지난 6월 28일 기존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를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y)로 개편하여 청소년정책과 사업 부서를 아동, 학교, 가족정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07).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전체 차원의 청소년정책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책대상을 범주화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의를 8-24세로 설정하고 세분화하여 아동 중기(8-12세), 사춘기(13-18세), 젊은 성인기(19-24)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 청소년’의 정책과 사업(Vulnerable Youth Policies), 발달 수준에 맞는 역량 준비와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과 사업(Youth-Focused Policies) 및 교육, 건강 등 청소년을 포함하는 일반 정책과 사업(Universal Policies)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참조: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2003). 따라서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정책은 크게 일본형과 영국형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제3의 길도 모색 가능할 것이다.

는 정책이념과 가치는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08년 체제’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이념과 가치는 현재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따뜻한 성장지원을 통한 자립과 시민성 함양(自立과 共生)’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따뜻한 성장지원’은 일반 대다수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역량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 빈곤과 같은 전통적 위험과 더불어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뒤흔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역량개발을 통한 제2의 기회를 지원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원을 포함한다. 자립과 시민성 함양의 정책이념과 가치에 내포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인식은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립 의지와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지체시키는 비효율적 사회의 개선을 내포한다.

새로운 정책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은 보육과 아동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등을 중심으로 하되, 가족정책, 보건과 건강정책,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등과 아우러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비행과 교정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 스스로 직접 집행 가능한 고유영역에 매달리고 싶은 자기 폐쇄성과 고립성의 유혹과 끊임없이 맞서며 새롭게 진화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아동청소년정책과 같은 사람 중심, 대상 중심의 정책이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과 같은 기능 중심 정책과 나란히, 상호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으로 비껴나 자기 고유기능영역을 고집하면 할수록 정책적으로 주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류집단화하기 어려운 세대 중심의 아동청소년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아동청소년정책이 새롭게 정립해야 할 진화 모습은 마치 인터넷 웹(Web)의 발전 과정에서 도래하는 웹 2.0²³⁾ 시대의 웹 플랫폼²⁴⁾의 진화와 같은 것이

23) 웹 2.0이라는 용어는 오라일리과 미디어라이브인터내셔널이 주최한 컨퍼런스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웹에 일종의 전환점을 찍은 닷컴 붐기와 새 시대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시작으로, 이를 기존의 웹과 차별화하기 위해 “웹 2.0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웹 2.0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08년 체제’의 아동청소년정책은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이어야 하며, ‘플랫폼 컴퍼니(Platform Company)²⁵⁾’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플랫폼 리더로서의 ‘플랫폼 리더십(Platform Leadership)²⁶⁾’

현재 웹2.0의 진화된 모습은 웹1.0에 대응되는 개념보다는 기존 웹 환경에서 사용자의 중심의 정보 검색 및 상호작용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웹 플랫폼의 형태로 정보의 생성 및 공유, 소비가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통칭하는 용어로 진화하였다. 웹 플랫폼 기반의 웹 2.0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둘째, 정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극대화 한다.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웹 사이트에 올리거나 서비스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다양성 및 정보의 품질이 향상된다. 정보가 개인의 참여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와 이용자 집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로 정보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의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플랫폼으로서 웹에 중요한 특징이다. 넷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용이하다. 기존 웹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플랫폼으로서 웹은 공유되거나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 할 수 있다. 다섯째, 웹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의 진화이다(참조: 이낙선·양희석, 2007 ; 권기덕, 2007).

- 24) 하이테크 분야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의 제품을 일정한 플랫폼에 내놓는 것이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다른 기업들이 보완적 제품과 서비스를 축적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Gawer and Cusumano, 2002). 그리고 웹 2.0에서는 열린 플랫폼이 많은 사람이 모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권기덕, 2007:2).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이 플랫폼의 변화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면서 막대한 수입과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 25) 플랫폼 컴퍼니는 생산은 직접 하지 않지만 판매는 전세계에 걸쳐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새로운 기업모델로 소유보다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하는 기업이다. 고객이 어디에 있으며,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할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고객과 공급업체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김국태, 2006:3).
- 26) Gawer와 Cusumano(2002)는 플랫폼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4가지 핵심요소를 강조한다. 기술 플랫폼은 기업의 제품이 보완재 없이 사용될 때 한정된 가치를 갖고 보완재와 함께 사용될 때 높은 가치를 얻게 될 경우 발생한다. 기술 플랫폼을 수립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위, 기술, 관계, 조직의 4 가지 핵심요소를 잘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위’는 기업 내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기업들에 무슨 일들 하도록 허용할 지에 대한 것, 둘째, ‘기술’은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며 인터페이스를

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이 갖추어야 할 ‘플랫폼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은 우선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요구’를 플랫폼 구축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플랫폼은 기존의 전문가적 경계나 요구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아동과 청소년 특히 가정의 자립과 공생을 위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읽어내고 고려하여야 한다(참조: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07:2).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시민성 함양은 정부나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자립과 공생의 요구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으로 독립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과 제도를 비롯한 교육, 노동, 복지 등이 ‘청소년 친화적 정책(Youth Friendly Policy)’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일종의 ‘청소년 렌즈(Youth Lenses)’ 구실을 한다(참조: The World Bank, 2006). 아동청소년정책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노동, 보건, 건강, 복지, 비행과 청소년사법체계 등과 소통하며 이 기능들이 개방되고,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마치 웹 플랫폼이 개방, 참여, 공유를 주요한 가치(권기덕, 2007)로 삼는 것과 같다.

플랫폼 리더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가는 정책 생태계 전체가 모든 부분의 합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Gawer and Cusumano, 2002). 그러므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가는 작업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이 이 땅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어야 하며, 그 플랫폼의 리더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정책의 인식은 매우 유용하다.

갖는지, 그리고 지적 재산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를 다룬, 셋째, ‘관계’는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가 협조적인지 경쟁적인지와 관계됨, 넷째, ‘조직’은 기업에서 다른 3가지 요소를 지원하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지와 관련됨. 이와 같은 Gawer와 Cusumano이 주장하는 플랫폼 리더십의 핵심요소는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비행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 관계해야 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이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정책은 더 이상 교육만도 아니며, 사회 서비스만도 아니며 사회적
 끌어안기, 문화, 스포츠만도 아니며 폭력·약물·가출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
 동에 대응하는 것만도 아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큰 것이다. 이 부분들의
 합보다도 더욱 큰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많
 은 가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하는 것이다(참조:
 The Center for Guidance Studies, 2002).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이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참조: 김국태, 2007:5-7)해야 한
 다. 첫째, 아동청소년정책을 플랫폼의 리더로서 다시 재포지셔닝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이 자신의 고유영역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영역에 다양한 기회와 지원 및 서비스가 아웃
 소싱될 수 있도록 통합자, 연계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정
 책과 행정은 언제나 자신의 고유업무에 다른 아동청소년관련 자원과 기회를
 통합, 연계, 조정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둘째, 플랫폼 리더로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제 몸집 줄이거나 다시
 추스르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은 현재 가용한 자
 원에 비해 지나치게 새분화 되어 있거나 다소 비대화된 서비스 기구나 요소
 를 재검토하여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몸집
 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역 수준의 반관반민 형태의 서비스에
 서부터 통합하여 아동청소년 지원과 서비스의 중심 허브로 구축하고 통합적
 지원과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영국의 ‘아동트러스
 트(참조: 이광호, 2008b)’와 같이 정책고객이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새로운 통합적 아동청소년 지원중심
 허브(가칭 지역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쉼터 및 지역아동보호종합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지역의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모여들 수 있
 는 작은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 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원 중심
 기관은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기관은 다양화하여 지원하

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부처간 교육, 보건, 복지,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부터 지방과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 지원중심 허브에서부터 지역의 작지만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와 정보의 표준 공유로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동청소년과 가정에 제공하는 활동, 역량, 내지 지원 정보의 표준 공유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나 관련 시설에서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정보와 서비스의 표준을 공유하는 일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제도 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은 짧은 기간에 통합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서비스에는 많은 자격 소유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표준을 설정하고 함께 공유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²⁷⁾.

넷째,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요구와 실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정책 고객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교육, 보건, 복지 등 기능 위주 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을 차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동청소년과 가정의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체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아우러지는 아동청소년정책 플랫폼을 리드해가는 핵심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27) 마치 이동통신사들이 각각의 고유번호를 유지하면서도 010과 같은 통합번호를 운영하며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과 같다. 영국에서도 커넥시온스 사업의 핵심 요원인 퍼너스널 어드바이저(PA)에 다양한 자격 소지자를 활용하고 공유하고 있다. 일본도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을 위해 유스어드바이저(Youth Adviser)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상담 등 다양한 자격과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内閣府政策統括官, 2006 ; 2007). 이와 같이 선진각국은 새로운 서비스에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자격 소지자의 참여를 개방하는 추세이다.

2) 생애 전기 통합형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 과제 제언

플랫폼 원리 입각하여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정책이념과 목표 설정, 정책의 대상과 범주 정립, 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주요 정책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념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연령대상 조정과 정책 범주 정립, 정책 조정기구와 법령 및 서비스체계 등 추진체계의 정비,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대상 범주 재정립

탈산업화, 세계화, 양극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령화, 가족구조의 해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나 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식과 정보의 생명 주기의 단축으로 야기되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자칫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정상적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재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각종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충분한 사회적 인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물음은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해결하고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지금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빈곤과 희망의 격차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참조: World Bank, 2006:xi)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요구되는 학습, 일(직업), 건강한 생활, 자립과 가족형성, 시민성 등을 준비(참조: World Bank, 2006)하여 건강하게 성인으로 이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연령대상 범위는 기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한 조직 기반으로 미루어 0세에서부터 재설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지 연령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매우 전략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0~19세 미만으로 설정하는가, 아니

면 선진 각국과 같이 24세 내지 29세까지 상향할 것인가는 정책과제에 직업, 노동, 청년실업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맞닿아 있다. 총체적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대표 브랜드를 아동과 청소년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과제는 정책과제의 초점이 성인으로의 이행의 자립과 역량 강화에 있는가, 아니면 안전망 구축 등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1단계로 0~24세 이하로 연령범주를 설정하고, 2단계로는 30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평균 입직 연령이 25세를 넘는 현실이나 80%가 넘는 대학 진학을 등을 고려할 때 24세 이하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연령범주가 출생에서부터 자립 시기까지로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책의 범위도 아동보육과 아동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직접 관련되는 가족정책, 보건과 건강정책,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비행과 교정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에는 자신의 고유영역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과 소통하는 총괄·조정기능의 강화가 다시 한번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보건과 건강, 보육과 교육, 노동, 복지, 비행과 소년사법 등과 관련된 부서들에서 매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과제와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점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연령변수와 그 요구에 따라 제정되어 있는 현행 관련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청소년 보육, 복지, 육성, 보호 관련 법령들은 제각기 특정 연령범주를 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총체적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특정 연령범주에 한정된 각종 법령은 새로운 총체적 접근과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에 장애(참조: Jones and Wallace 지음, 강영배·김기현 옮김, 2007:156)가 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은 과감하게 연령범주가 아닌 보육, 안전, 복지, 역량강화 등 서비스와 성장과정 관점에서 통합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설계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체계는 정부영역과 시민사회 영역, 민간부분의 영역들이 어떻게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중심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규제가 아닌 보호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보호복지법(가칭)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는 아동청소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청소년활동지원법 내지는 아동청소년역량강화지원법(가칭), 아동청소년보호복지법(가칭),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존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유해환경의 대분류별로 해체하여 음주와 흡연, 매체관련 환경별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법은 규제보다는 억제와 적정화 중심으로 제정²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출생에서부터 자립시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법령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아동청소년정책이 새로운 조직여건과 환경에 걸맞은 통합적 정책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정책을 둘러싼 다른 정책과의 관계성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그동안 그렇게도 노력하며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의 강화이기도 하다. 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아동청소년관련 조정기구와 정책계획의 현황은 다음 <표 IV-2>와 같다. 이대로 갈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아동청소년과 가정정책과 관련하여서만도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조정기구를 3개 이상 두

28) 청소년 유해환경 억제와 적정화 관련 법령은 일본과 같이 지방정부의 조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시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강의 음주와 흡연, 매체 등 유해환경의 요건과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단속과 적정화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조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조례에서는 유해환경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권한을 보다 강화할 시점이다.

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정책실만도 2개 이상 가져야 한다. 지방정부에서의 혼란도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은 불가피할 것 같다. 우선 1단계로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건강가정지원법 상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도 포함하여 가칭 ‘아동청소년가족정책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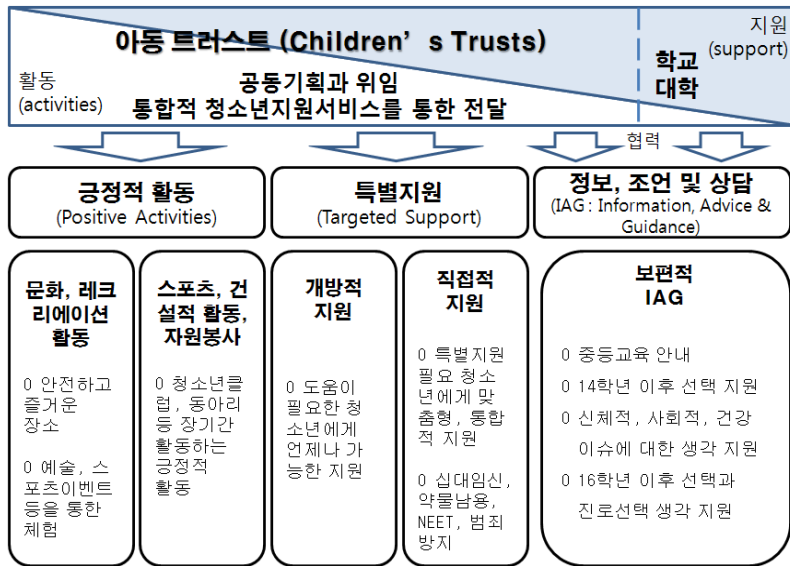
〈표 IV-2〉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조정기구와 정책계획의 현황

법령	연령범위	조정기구	중앙정부 계획
청소년기본법	9~24세 이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관계공무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5년)
아동복지법	18세미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지방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6세미만	보육정책조정위원회(국무조정실장)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보육계획(5년)
건강가정지원법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국무총리)	건강가정기본계획(5년)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질적인 정책이슈 협의, 조정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정책실장 혹은 관련 정책관을 장으로 하고 각 부처 관련 과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 기간 TF 형식의 ‘과장급 회의’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장급 회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현안 이슈나 보건과 건강, 청소년진로, 자립지원 등 정책 현안별로 일정 기간 운영하며 종합대책과 추진 아젠다를 만들고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만 하더라도 포괄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보육정책과장, 사회정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들이 이슈별로 부분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공동 기획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보건의료정책과, 건강정책과, 모자보건과, 정신건강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학생장학복지과, 진로취업지원과, 학교제도기획과, 직업교육정책과, 교육복지기획과,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 등), 노동부(고용정책과, 일자리창출지원과, 직업능력정책과, 청년고용대책과 등), 법무부(소년보호과, 여성아동과 등) 등 아동청소년의 일상이나 비행, 자립과 관련된 실무 과장급이 정책 이슈별로 모여 아동청소년정책과장과 함께 종합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매우 유효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출생(의존)에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보육, 저출산, 안전과 보호, 건강과 복지, 사회안전망, 진로와 취업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해 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아동청소년자립종합지원회의’(가칭)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은 연령범주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추진체계와 실제 일선의 사업 추진방식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하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요구에 맞춘 통합적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실상부한 수요자 요구 중심의 지원체계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재구축 2가지 원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각각 구심점 없이 다소 난립되어 있는 서비스 체계를,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축을 만들고 종합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비(참조: 김미숙 외, 2007a)하는 일이다. 둘째, 중앙, 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중심축은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기관은 다양화하여 실제 일선 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도) 수준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지방기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기관, 무지개지원센터, 아동정책 분야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등과 각각의 지방기관 등을 일정 영역별로 대통합 내지는 부분 통합을 통해 중심축의 머리와 허리 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중심축의 형성에서 일반 아동청소년, 위기 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틀어 대통합할지, 아니면 중영역 중심으로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IV-2] 아동트러스트 서비스내용과 체계

그렇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전략적 고려를 하더라도, 지역(시·군·구) 수준에서는 출생과 보육에서부터 활동, 보호, 복지, 상담, 정보제공 등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와 빈곤 아동청소년 및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및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영국의 ‘아동트러스트(Children's Trust)’([그림 IV-2] 참조)와 같이 일반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 지원을 비롯하여 긴급하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특별지원과 보편적인 정보, 조언과 안내(IAG; Information, Adviser & Guidance)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역(시·군·구) 수준의 청소년수련관을 명실상부한 새로운 통합적 아동청소년 지원중심 허브(가칭 지역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수능공부방 및 지역의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단체와 시설 등 기관들이 방사형으로 모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의 통합 전략은 지

역 수준의 서비스통합을 고려하여 각각의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효과적 연계전략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동 요구분석, 우선순위 분담 결정, 유용자원 확인, 자원배치에 대한 공동기획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제안

따뜻한 생애 전기(前期) 통합형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과제는 ‘자립(自立)과 시민성 함양(共生)’의 정책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며,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요구에 바탕을 둔 ‘날줄’과 ‘씨줄’의 과제들로 촘촘하게 짜진 플랫폼이어야 한다(<표 IV-3> 참조). ‘날줄’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건강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보건과 건강, 보육과 양육 및 교육, 역량개발을 목표로 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및 위기와 비행 예방과 극복 등과 관련된 과제들의 축이다. 소위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기능 중심의 과제이다.

‘씨줄’ 과제들의 축은 2가지 부문을 포함한다. 첫째는 연령 단계별 과제 부문이다. <표 IV-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생(의존)에서부터 청년기(자립)까지의 생애 전기를 크게 영유아 단계(0~5세), 아동청소년 전기(초등학생, 6~12세), 아동청소년 후기(중고등학생, 13~18세), 청년기(0~29세 혹은 24세)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로 발달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이다. 둘째는 일반 아동청소년 이외에 요보호 아동청소년, 지역의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나 폭력 피해, 문제행동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비행 및 교정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심의 과제들이다. 날줄과 씨줄의 촘촘한 과제들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의 지원(S; Support)과 기회(O; Opportunity) 및 서비스(S; Service)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추진해온 기존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사업’ 및 ‘요보호 아동보호·육성’과 ‘아동복지지원 사업’ 등은 재구조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IV-3〉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날줄과 씨줄 원리) 제안

청년기	19~29세 (24세)	생애 전기 (前期)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생활 지원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 법, 청소년 성보호 법)	직업역량			3업 (취업, 창업, 전업) 지원 청년 생활 설계 및 독립 지원 사회 및 정책 참여 증진						
아동 청소년 후기 (중고등 학생)	13~18세			기본 보건 및 건강 확보 (건강 및 체력 최소 기준)	대인교육 기화자원 및 사회교육 경감	직업 의욕 및 시민 역량 개발	생애 역량 개발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안전 및 행복 지원	아동 청소년 권리 보호	유해 환경 억제 적정 화	아르바이트 및 직업 체험 지원	소년비 행대책 및 사법 체계 개선 위기아 동청소년 통합 지원	
아동 청소년 전기 (초등 학생)	6~12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152 2 희망프로 젝트)	기본 학습 및 생활 역량 습득		학업 및 취업중단 청소년	아동 학대, 폭력 등 위험 으로부터 보호		-		
영유아기	0~5세				영유아 보육 법	맞춤형 보육 (희망프로젝트)							
의존에서 자립으로 (自立과 共生)			직접 법령	보건 (건강)	교육	역량개발 (활동)		복지	보호		노동		위기 비행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첫째, 따뜻한 생애 전기 통합형 지지 체계의 큰 그림으로서 5개년 계획(가칭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5개년 계획은 새로운 정책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일반 아동청소년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과 복지 등 기능영역별, 연령단계별 과제를 대강화하여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별 과제도 역시 대강화하여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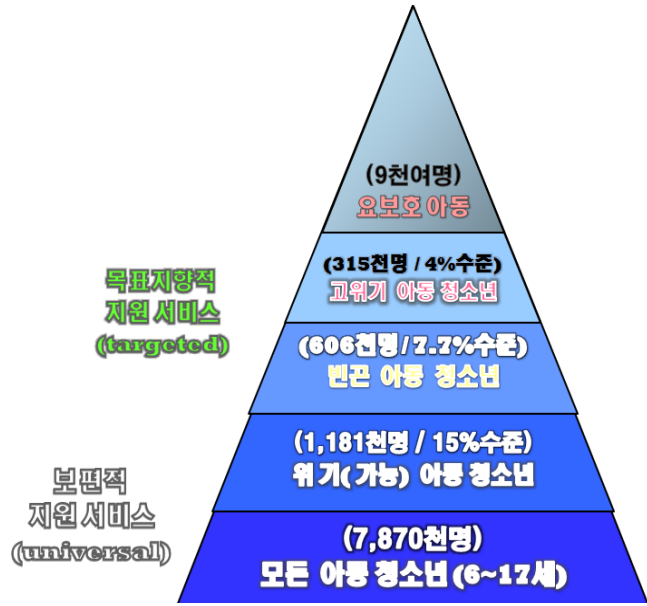
연령단계별 과제는 우선 영유아 단계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기본 건강과 안전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을 내실화하고, 특히 0~5세 사이의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을 필요로 하다. 출생에서 건강하게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생애 전기 통합형 지지체계의 초기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전기의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최소한의 건강과 체력기준을 정하는 등의 보건과 건강 증진, 기본학습능력과 자기정체성 갖기 등 자립에 필요한 기초역량(자립 기초역량) 및 일상생활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회생활 역량(초기 시민성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학습 기회 제공의 골격이 포함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후기의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최소 체력기준 달성과 음주나 흡연 등 약물 예방 등의 보건과 건강 증진, 직업 능력과 의욕이나 취업에 필요한 정보 등 자립의 기반이 되는 역량(자립 기반역량) 및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사회생활 역량(시민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을 포함한 19세 이상의 청년기 과제는 평생학습을 위한 준비, 직업능력 및 취업지원, 인생 설계를 위한 코칭 및 정책 입안과정의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경제적 참여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별 정책 과제는 우선 요보호 아동청소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청소년,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원 과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5개년 계획의 큰 그림을 기반으로 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영역별 과제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별 대상 집단별 정책과제 아젠다 중심의 추진계획들이 서로 얹혀 입안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을 명시하기 않고 2~3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 계획, 아동청소년 진로코칭 추진방안, 소년비행 대책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 아젠다는 앞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정책 이슈별로 관련된 부처의 담당 과장급 회의를 통해 생성되고 점검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 아젠다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생애 전기를 통틀어 발달단계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생애역량개발체계를 구축하는 ‘생애기본역량 개발 종합 추진계획(가칭)’이 필요하다. 자립과 공생을 위

한 생애역량을 자립 기초역량과 기반역량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역량 진단도구 개발, 역량 배양 프로그램과 내용 및 성과 진단 등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애역량 추진계획은 기존의 사회적 실체가 결여된 청소년활동 부문을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이 일상에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활동 참여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즉, 기존의 아동청소년활동이 일회적 사업성이나 이벤트성 아니면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참여하는 역량개발 중심의 다양한 실제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진로코칭 추진방안(가칭)’ 마련이다. 기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진로 및 취업지도 학습과정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각각 추진할 수 있는 실용형의 진로코칭 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고려하는 종합적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종합계획(가칭)’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수능공부방 운영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학교’ 사업과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보육에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종합적 추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화할 것인지, 향후 사교육과 맞설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지원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중심(일부 학교나 지역 단체 포함)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과후 활동에는 최소한의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와 시설 및 종교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기관인증제(가칭)’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 기관인증제도는 현행 보육인증제도와 함께 민간 참여와 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선을 생애 단계별로 마련해가는 작업이다. 또한 출생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저년령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저년령

아동청소년 안전보호 종합대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안양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사건 등 저년령 아동청소년의 성폭력과 실종, 살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기본 안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주: 0~5세 영유아 제외
 [그림 IV-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한편 특정 대상집단별 정책 아젠다로는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정비를 비롯하여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배제 집단에 대한 재기의 기회 부여 방안의 재구축, 소년비행과 사법체제의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의 정비를 기존의 아동발달지원 계획(CDA), 위스타트(We-Start) 사업, 희망스타트 (아동 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총망라하여 연령단계별로 재정비하고 내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적 사업이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숙원 사업으로 고려되어 왔던 ‘아동청

소년 수당제도' 도입(참조: 조애저 외 2000 ; 김미숙 외, 2007b)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보편적 지원 형태의 아동청소년 수당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제도를 고려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집단에게 우선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일명 **CYS-net** 사업도 위기 아동청소년을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발달 경로별로 분류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지원범위와 경로도 기존의 요보호 아동복지 지원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 새로운 아젠다를 마련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특정 대상집단 정책 아젠다는 아동청소년 중 낙오자가 없는 세상, 성장의 열매와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정과 아동청소년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격차를 줄여가는 사업이다. 선진복지국가로 향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반이다.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정책은 이제 '출생하여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체시키는 비효율적 사회'를 극복하는 첨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08년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아동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독립을 지체시키고 억압된 비효율적인 교육적 관리(?) 하에 두는 것은 더 큰 국난(國難)을 불러올 수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세대간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는 '젊은 세대의 세대 독립과 시민성 함양'이라는 국난 극복의 첨병에 다시 우뚝 서야 한다. 그 옛날 광야에 말달리며 자신만의 성을 쌓기보다 길을 내며 세계정복의 꿈을 꾸었던 칭기스칸처럼, 아동청소년정책은 생애 전기 통합형 사회적 지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보육, 양육, 교육, 노동, 보건, 복지정책 등 다른 많은 정책들과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자신의 성을 만들기보다 길을 내는 일을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이해와 최우선 이익 관점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과 사교육 및 청년실업 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구나' 하는 식의 관행에 파묻혀 잃었던 도전적 패기와 본질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중심

의 정책이 자신의 고유영역을 고집하면 할수록 주변화 되는 지닌 시절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동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진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게 진정 우리의 ‘어린, 젊은 세대에게 있어도 되는 일인지’를 아동청소년정책이 나서서 물어주고 제기해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혀버릴 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체득하고 나면, 고객 관점에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아동청소년정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체시키는 요소요소들의 길목에 아동청소년정책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것은 아동청소년정책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선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하고 싶은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기회상실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 아동청소년을 차디찬 밤바람으로 내모는 사교육의 ‘광풍(미친바람)’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서도 비싼 등록금으로 자기의 학비를 감당해야 할 엄두도 못내고, 부모에게 빌붙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눈치 채고, 부모의 비위를 그슬리지 않으려고 결눈질하며 독립을 꺼리는, 우리 청소년을 ‘찌질이(조한혜정, 2007)’로 만들어가는 교육관행과 제도의 ‘살바람’에도 맞서야 한다. 우리 청소년을 책임기보다는 스크린으로 내몰고 문자메시지에 마음을 빼앗아가는 미디어 과소비의 ‘된바람’과도 맞서야 한다. 10대, 20대에게 젊음을 과하게 부추키며 소비를 재촉하고 주머니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마케팅의 ‘피죽바람’에도 맞서야 한다. 20대에게 올바른 일 자리를 주지 못하는 청년실업의 ‘텐바람’에도 맞서야 한다. 그리고 10대와 20대가 세대독립을 꿈꿀 수 있도록 주거권, 가족 형성과 의사결정권 등을 점차 키워가는 실바람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한때 자신의 잘못이나 빚나간 선택으로 꿈을 잃어가고 소외되어가는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기의 ‘산들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를 마시는 우아함을 중단하고 20대 또래가 창업한 커피가게에서 마시면 젊은 세대 20%가 창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함께 살아가며 깨어나기의 ‘꽃바람’도 일으켜야 한다.

지난 시간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일반 젊은 세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왔다. 그 자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사회적 지지만으로 견뎌야 하는 아픔의 자리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아동청소년을 불모로 호구지책으로 삼는 자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아동청소년정책은 ‘85년 체제’를 바탕으로 선진화로 나아가는, ‘아동청소년에게 21세기적 창조적 희망을 전하는 침병’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침병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앞에 아무도 없는 가장 앞서 나가는 자들이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장미’는 이런 침병의 날개 짓으로만 꽃피울 수 있고, 침병의 작은 날개 짓으로 일으키는 나비효과는 백만 송이 장미를 피울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과 청소년학 내지는 관련 이론적 접근 노력 역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이론과 실천학문이 함께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아동학, 청소년학’으로의 재정립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도래에 걸맞은 ‘통합학문의 시대’, ‘학문의 통섭시대(조선일보, 2008. 3. 17)’에 어울리는 창조적 자기파괴를 수반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공론의 장으로써 청소년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서 통합 논의에 따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Ⅱ장은 이봉주 교수가 청소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현황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통해 중장기 아동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발전방향의 기초 위에서 중장기 아동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아동정책의 추진전략으로 ① 현재의 문제 중심적이고, 사후대처적인 그리고 파편화된 아동정책 체계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목표에 근거한 아동중심적인 정책 체계의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② 현재의 파편화된 아동정책 추진체계에서는 아동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정책 주체가 없으며 현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통합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설 협의체 구조에서 사무국을 가진 상설 기구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③ 아동정책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아동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목표들이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Ⅲ장은 송병국 교수가 청소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정책과 통합되더라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과제,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그 대응,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제언 등을 다루고 있다. 송 교수는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①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질적으로

상이함을 인정해야 하며, ②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두 정책 간에 합의가 필요하고, ③ 아동청소년정책은 복지나 보호정책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강조하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포괄하면서 적극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역량개발까지를 담은 정책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IV장은 이광호 교수가 청소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생애 전기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의존에서 자립까지의 포괄적 성장지원 체계)의 재설계라는 입장에서 새 정부의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따뜻한 생애 전기(前期) 통합형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과제는 ‘자립(自立)과 시민성 함양(共生)’의 정책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며,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요구에 바탕을 둔 ‘날줄’과 ‘씨줄’의 과제들로 촘촘하게 짜진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날줄’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건강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보건과 건강, 보육과 양육 및 교육, 역량개발을 목표로 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및 위기와 비행 예방과 극복 등과 관련된 과제들의 축이다. ‘씨줄’ 과제들의 축은 2가지 부문을 포함한다. 첫째는 연령 단계별 과제 부문으로 출생(의존)에서부터 청년기(자립)까지의 생애 전기를 크게 영유아 단계(0~5세), 아동청소년 전기(초등학생, 6~12세), 아동청소년 후기(중고등학생, 13~18세), 청년기(0~29세 혹은 24세)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로 발달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이고 둘째는 일반 아동청소년 이외에 요보호 아동청소년, 지역의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나 폭력 피해, 문제행동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비행 및 교정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심의 과제들이다. 날줄과 씨줄의 촘촘한 과제들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의 지원(S; Support)과 기회(O; Opportunity) 및 서비스(S; Service)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추진해온 기존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사업’ 및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과 ‘아동복지지원 사업’ 등은 재구조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결론

이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외에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분야 뿐만 아니라 아동분야의 보다 정교한 논의의 장으로 청소년미래포럼 및 아동미래포럼을 제안하여 첫 번째 모임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로 청소년 미래포럼과 아동 미래포럼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V-1〉 향후 연구주제

	청소년 미래포럼	아동 미래포럼
1월	청소년학의 개념 정립과 연구영역	한국 아동의 특성과 현실
2월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아동 시설과 단체
3월	청소년 시설과 단체	아동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4월	청소년 재정	아동 정책 재정
5월	아동미래포럼과 청소년미래포럼	

청소년 미래포럼과 아동 미래포럼은 매회 선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적인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창립 20주년 행사인 「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2009. 6.11 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통합논의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정책의 과거, 현재를 진단해 보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통합논의의 다른 한 축인 아동정책을 아울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발표내용들과 많은 논의들이 향후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2007). 꿈이 있는 아동! 비전을 가진 청소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국회 문교공보위원회(1987), “청소년육성법안 심사보고서”, 1987년 10월, 문교공보위원회.
- 권기덕(2007), “웹 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CEO Information, 제588호, 2007년 1월 24일, 삼성경제연구소.
- 김국태(2006), “플랫폼 컴퍼니에 주목하라”, LG주간경제, 2006년 7월 19일, LG경제연구원.
- 김미숙 외(2007a), 정부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발, 정책보고서 2007-14,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외(2007b),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07-13,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명(2007), “사회투자정책과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공동 주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2007년 2월 21일.
- 김진호 외(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내무위원장(1961), 미성년자보호법, 의안번호 AA0236, 1961년 11월 30일 제안, 1961년 12월 5일 의결.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편(2006),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서울: 동도원.
- 문교사회위원장(1961), 아동복지법, 의안번호 AA0228, 1961년 11월 29일 제안, 1961년 12월 22일 의결.
- 문성호(2007), “토론 2: 사회투자정책의 개념과 목표”, 청소년 관련 4개 학회 공동정책 토론회, 제4차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2007년 7월 6일,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외 3개 학회.
- 미우라 아츠시 지음, 이화성 옮김(2006), 하류사회,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박세일(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서울: 21세기북스.
- 보건복지가족부(2008). ‘08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 서문희 외(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04-18,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윤태익(2005), 나비: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서울: 21세기북스.
- 이경상(2008).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실용화 방안. 제44회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 발표

- 자료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이광호(2007a), “사회투자정책 관점에서의 청소년정책 전략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 발전세미나, 미래사회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투자정책을 중심으로, 2997년 5월 8일,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 이광호(2007b),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변화의 성찰, 그리고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탐색적 제언, 제1회 청소년사랑포럼, 주제발표, 2007년 10월 26일, 한국스카우트연맹,
- 이광호(2007c),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성찰과 새 정부의 정책과제”,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제16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를 위한 전국대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7년 11월 14일.
- 이광호(2008).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호(2008a), “새 정부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선진화와 청소년단체의 역할에 대한 제언 - ‘85년 체제’ 재편과 청소년단체의 창조적 자기 변화의 의미”, 새 정부에 바라는 청소년정책의 방향, 그리고 과제, 제1회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세미나 기고, 2008년 1월 31일.
- 이광호(2008b),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2000년대 이후 일본, 영국, 핀란드의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 제10권, 제2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낙선·양희석(2007), “웹2.0-웹플랫폼의 파급효과와 전망”,
<http://blog.naver.com/impperfume/50022070369>.
- 이인실(2008), “삼각 파도 맞은 한국 경제”, 조선일보, 2008.3.15~16, C2.
- 이지평(2008), “경제 지표 빨간 불... 일 되살아나는 장기불황 악몽”, 조선일보, 2008.3.15~16, C11.
- 이철위(1994), “전환기 상황의 한국 청소년정책”, 청년연구, 제17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현정(2007), “비보이과 구글”, 대한민국 진화론, 서울: 동아일보사.
-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부(1981), “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 1981년 3월 26일 정부제출.
- 정익중(2007). 참여정부의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제16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한 전국대회 자료집.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조애저 외(2000), 아동수당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00-0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승(2002),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과 의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46집, 경기대학교.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 위험 사회에서 살아남기, 조한혜정 칼럼집,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좋은만남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7),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 비용 보고서, 서울: 선우.

청소년대책위원회(1985),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1986),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1987),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대책위원회.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7권 2호. 구태회외 18인 (1970), 청소년보호법(안), 의안번호 070837, 1970년 11월 30일 제안, 1971년 6월 30일 임기만료폐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결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결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유럽 국가의 청소년정책 ;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연구 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Benson, P. L., & Pittman, K. J.(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2003), Policy Matters: Setting and Measuring Benchmarks for State Policy - Engaging Youth in Positive and Productive Roles: Recommendations for State Policy, Washington, D. C.: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7), The Children's Plan -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Gawer, A. and Cusumano, M. A.(2002), Platform Leadership,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

Jones, G. and Wallace, C. 지음, 강영배·김기현 옮김(2007), 청소년시민사회론, 서울: 교육과학사.

Ministry of Education(2007),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Finland, Helsinki: Ministry of Education.

Nieminen, Juha(1997), "Development of the youth work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Finland: National Report, Helsinki: Ministry of

Education.

Olk, Thomas(2006), "Children in the Social Investment State?", Well-being of children and labour markets in Europe, Centre for Globalisation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Hamburg, March 31~April 1, 2006

The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UN(2005), World Youth Report 2005, New York: UN.

内閣府(2007), “「青少年育成施策大綱」策定後の主な施策の実施状況”, 第5回 青少年育成推進本部 會議 資料 1, 2007年 11月 6日.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3), 青少年育成施策大綱, 2003年 12月 9日,

[http://www8.cao.go.jp/youth/suisin/taikou /mokuji.html](http://www8.cao.go.jp/youth/suisin/taikou/mokuji.html).

内閣府政策統括官(2006), “英国のコネクションズ・パーソナル・アドバイザーの 制度等に関する調査”, 調査研究委嘱先-株式会社N T T データ経営研究所, 2006년 3월.

内閣府政策統括官(2007), “ユースアドバイザー(仮称)の研修・養成プログラムの開発に向けた調査研究報告書”, 調査研究委嘱先-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 2007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I.

부 록

1.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2.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3. 제1회 청소년 미래포럼 회의결과
4. 제1회 아동 미래포럼 회의결과

부록 1.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제1회 한국 청소년 정책포럼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일시: 2008.3.28(금) 15:00

장소: 한국교총 대회의실 (2층)

<순 서>

개회사 15:00 - 15:10

청소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며 이종태(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15:10 - 15:40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 과제 이광호(경기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15:40 - 16:00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관한 논평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관한 토론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자유토론 16:00 - 17:00

<원장 인사말>

○ 이종태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임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부임 후 느낀 것 중 하나가 청소년분야 연구자 선생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장으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었고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도 종전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고 담당 부서명도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느꼈습니다. 핵심기능이 ‘복지’에 있는 부서에 속하게 된 것은 기존의 ‘역량강화’에 맞춰져 있던 청소년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한 묶음으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기존 청소년 정책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정책 포럼’을 열게 된 첫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자 분들을 한데 모시고 의견을 교환할 지속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이 추진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일천해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5차례 공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중 마지막 5차는 큰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기회가 되는대로 유관 청소년 부서와 함께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사 정리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청소년정책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 표>

○ 이광호 (경기대 교수)

최근의 관심사는 변화임. 변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있음. 변화의 동력과 에너지는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돌아보기를 시도했음.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들과, 선진 각국 특히 영국과 일본에 대한 둘러 보기를 시도했음.

<지정토론>

○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발제문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했음. 첫째는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경계임. 인간 중심의 사고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는 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이 가장 문제라는 것임. 학교 교육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함.

○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상에 이번 포럼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문서 과일을 올려놓았으면 함. 개인적으로 2002년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 카페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공유를 하고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와 같은 온라인상 의사소통 공간을 만들었으면 함. 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89년 처음 설립되었을 때 기대됐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고 이광호 교수가 제안한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수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음.

<자유토론 내용 정리>

○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지난해 미국 캐나다를 방문해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기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음. 주로 자활, 거주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었고 그 기관들은 민간 기관이든 정부 기관이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었음. 대부분 통일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음. 그런 것이 플랫폼 서비스 아닌가 생각됨. 그쪽에서는 이미 플랫폼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음. 발제문 중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나와 반가웠음.

○ 이광호 (경기대 교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가 한데 모여지고, 모여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함. 우선 부모, 청소년, 아동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방과 참여 공유가 핵심적임.

○ 함병수 박사

청소년계는 20년 전 그동안 미개척지였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교육 쪽으로 접근했음. 교육의 틈새가 어디인가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음. 또한 이번 정부기관 개편에 따라 기존 청소년정책에 아동이라는 영역이 불음으로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관한 영역을 연구하려면 우리의 문화적 토양에 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됨.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그 문제임. 또한 청소년정책 연구의 방향을 자립과 시민성 쪽으로 맞추면 교육관련 부서와 업무 중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총론적 측면에서 의심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임.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위원회의 성격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함. 실질적 활동에 대한 영역이 빠질 것임. 보건복지부 체제에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됨.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나 수련관의 기능은 협소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발제에서 빠져있음. 조직과 정책이 바뀌었다는 현실의 틀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 틀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 논의돼야 함.

○ 조순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이러한 자리에 현장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발제문 중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 몸집 줄이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몸집 줄이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설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실무자에 대한 지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임. 또한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중 어떤 기준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가는가도 문제될 수 있음. 시설을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임. 자칫 원스톱 개념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과 원스톱으로 가야 됨.

○ 한상철 (대구한의대 교수)

사용하는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함. 용어가 먼저 검증되고 공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플랫폼 서비스라는 용어도 생소함. 그리고 아동정책에 대한 발제도 필요함.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구분과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복지 분야로 청소년 정책이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제로 느꼈음. 청소년 정책을 바탕 기조로 하여 아동정책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김영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책의 논리와 학문의 논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됨. 정치

의 논리를 먼저 인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김. 아동학과 청소년학이 각기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함. 두 개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과 정부 기관 통합이 후행돼야 함.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움.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기존에 분화된 것을 통합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 있음.

또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항상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조아미 (명지대 교수)

정부기관 변화에 따라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합해진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몸집 줄이기는 의문스러움. 발제자는 기관 통합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통합돼야 하는지 궁금함.

○ 김성애 (청소년 교육전략21 팀장)

여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돼야 함.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잘 돼 있음.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적음. 이런 인식을 넓혀야 함.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학교 학원 등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교육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강태중 (중앙대 교수)

학문적인 견지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됨.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같이 묶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학문영역에서 연구하고 발전해야 이 문제가 올바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송병국 (순천향대 교수)

청소년 정책의 수장과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현장이 많이 흔들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임.

○ 김현주 (중앙대 교수)

가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음. 가정과 아동 청소년 문제가 병합 논의돼야 함. 가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부분이 먼저인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 함.

○ 이광호 (경기대 교수)

발제문 중 몸집을 줄인다는 것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아동, 청소년, 가정과 밀접하게 접근시킨다는 의미임. 전달체계에 대한 몸집 줄이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됨. 서비스에 대한 가지 수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중심축을 중심으로 방사형 체계로 가야함. 그런 의미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가야한다는 발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해결될 것임.

가정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 아동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틀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직 일선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논의 하고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된 문제, 청소년 자립의 시기에 대한 문제 등은 꾸준히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정진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 서기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것이냐가 관심사임.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포괄 했다고 해서 아동 정책을 먼저 진행할 것도, 청소년 정책을 먼저 진행할 것도 아니고 조화롭게 열린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오늘 포럼을 바탕으로 더 세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 보건복지부가 족부와 긴밀한 연락과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그동안 아동 청소년의 보호뿐 아니라 미래와 관련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그 부분이 약해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속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임. 포럼에 대한 정리를 올리고 온라인상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세미 포럼 등의 형식을 통해 쟁점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립’이라는 부분을 학문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병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논의 할 것임. 청소년학과 교육학의 관계 설정도 계속 논의 할 것임.

<폐 회>

부록 2.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기록내용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 일정

- 주제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 일시 : 2008년 5월 6일(화) 15:00-18:00
- 장소: 한국교총회관 대회의실(2층)

□ 발표 1 : 아동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 / 이봉주(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1. 이재연(숙명여대 교수, 아동복지학과)
- 지정토론 2. 문성호(중앙대 교수, 청소년학과)

□ 발표 2 :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 / 송병국(순천향대 교수,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지정토론 1. 유성렬(백석대 교수, 청소년학과)
- 지정토론 2. 오정수(충남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

<개 회 사>

○ 이종태원장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으나 자주 만나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자리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음. 5/27 청소년분야 공동 학술세미나에도 많은 참여 바람

<자유토론>

○ 이봉주교수

- 이재연교수님 토론에 대한 답변 : 대부분 발제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이해함. 아동권리 관점을 리마인드 시켜주어 감사. 아동존재의 이해 시 **being**과 **becoming** 둘 사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과제임(아동의 현재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being**의 입장이지만 사회투자는 **becoming** 입장). 결국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적 담론 차이로 이해가능. 정책담론 수준에서 전략적 필요 : 이명박정부에서 **becoming** 담론 활용을 통한 사회투자 확대 주장 필요

- 문성호교수 토론에 대한 답변 :

1. 이명박정부 복지정책 축소 우려에 동감. 발제자가 능동적 복지 용어 처음 활용한 한 사람임. 이명박 캠프 관계자가 많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능동적 복지’ 용어를 사용한 이후 국정지표에 포함됨. ‘능동적 복지’ 용어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사용한 것. **passive welfare**(소극적 복지)에 대비되는 **active welfare**를 ‘능동적 복지’로 해석하여 사용함. 능동적 복지의 핵심내용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임. 능동적 복지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는 의견에 공감함
2. 아동정책의 개념
 - 아동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는 짧음. 발제자가 의식적으로 아동정책, 아동서비스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씀. 아동복지 도입과정에서 주로 미국의 **child welfare** 용어를 번역하여 사용함. 원래 미국의 **child welfare**는 협소한 개념으로(아동 가정 내 서비스 중심) 잔여적 복지 중심의 개념임
 - 발제자가 사용하는 ‘아동’ 용어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임. **children**은 미성년자로서 발달이 필요한 시기전체임. ‘발달’과제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3. 전달체계 효율화
 -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영역임.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체계의 하나로 지역사회

회에서 ‘아동-청소년-가족’을 묶는 통합적 사례관리체계(공적 간접 서비스) 중요

- 영국의 children policy 는 교육분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아동정책이 필요함

○ 이재연교수

- 왜 아동에 대해서만 being과 becoming 의 이중상태를 언급하는지 의문임. 예를 들어 노인문제에 becoming을 고려하지 않음

○ 이종태원장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만남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듦. 아동에서 being 문제가 소홀히 여겨진 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또한 being의 문제 심각. 입시문제 등 being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이 비슷함.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볼 때 태어나서 대학입학,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문제적 상황에 놓여있음. 발칙한 발상을 하나 하자면 아동과 청소년이 힘을 합해 교육을 공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기존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이 99%를 보내고 있는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에 대해 발언을 해야 함

○ 문성호교수

-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주면 됨.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딪치는 부분 있을 것임. 쟁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능동적 복지 문제에 있어 재정지출 문제가 핵심이므로 복지재정의 재편작업이 필요할텐데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재정이 증가할 가능성 있는가. 아동관련 복지관련 비용 검토 필요. 또한 법체계에 있어 통합 아동법 논의 시 연령구분 문제가 대두될 것임. 연령구분 문제는 정책의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음. 한편,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자원들간의 논란의 소지 있을 것임. 이에 세부영역들에 대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송병국교수

- 희망적인 이야기를 썼지만 그만큼 아래에 절망이 깔려있었음. 정부예산 10% 절감 시 청소년분야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러움
- 연령 구분을 주장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정책실 예산을 통째로 보면, 실제 보육정책 예산이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으로 둔갑할 수 있음. 보육, 아동, 청소년 각 대상별로 예산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구분되어야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되었는지 드러낼 수 있음.

○ 이봉주교수

- 지나치게 연령구분으로 가버리면 기존 파이를 사수하는데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파이를 키우는데는 발목을 묶을 우려도 있음. 대선 공약에 10% 절감 예산(20조원)을 보건복지 분야에 쓰겠다고 했으므로 이를 실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능동적 복지는 이래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 실체를 가지게 될 것임

○ 송병국교수

- 연령구분에 대한 이봉주교수님 의견에 동감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각각의 예산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연령구분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성호교수

- 이명박정부 신뢰문제 우려. 특히 4월 말 발표 재정지출계획서를 보면 우려가 됨

○ 박명운박사

- 아동학 분야 전문가 초청비율을 높여 이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들어야 함. 아동청소년기는 성인 이전까지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연령구분과 정책 성격 : 0-6세(영유아) : 보육 / 7-12세(아동) : 보호 / 13-18세(청소년) : 육성 / 19-24세(청년) : 부모역할 교육
-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인구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펼쳐야 함. 위기라

기보다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문제점 제기를 통해 정책개발 필요

- 현재 보육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분야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영희(내일여성센터)

-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이 청소년 역량강화이며 이는 이명박정부의 인재양성 아이디어와 만날 수 있음. 군포지역 우수인재 양성 사업이 학부모 관심을 끌고 있음.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때 ‘역량’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 학습 역량인지? 생활역량인지? ‘인재’와 ‘역량’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발달’ 개념보다 ‘생애주기별’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 저출산고령사회에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 이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문제가 중요함

○ 이봉주교수

- 논리개발의 필요성 : 청소년의 역량은 청소년기에만이 아니라 영유아기에서부터 발달하는 것이므로 생애주기를 너무 잘라서 바라보면 이에 얽매일 우려가 있음

○ 이종태원장

- 과제별로 갈 부분은 과제별로 접근하고 연령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연령별 접근을 하도록 함
- 보육, 아동, 청소년정책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려나아가야 함
- (아동청소년정책과 윤명희 전문위원께) 아동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임. 정책실의 연구예산을 할애하여 통합적 정책 정체성 정립, 효율적 지역 전달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숙의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기회를 주기바람

○ 김진호교수

- (이재연교수님께) 아동정책은 무엇인가?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는? 이봉주교수님은 ‘아동’은 발달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심.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아동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볼 때 개념상 차이가 있는 듯함. 이재연교수님이 생각하는 아동의 개념은?

○ 이재연교수

-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은 0세부터 18세 미만을 뜻함. 개인적 관심사는 중고등학생 연령 이전의 아동에 관심이 있음

○ 송병국교수

- 분업, 전문화, 협력의 시대인만큼 아동과 청소년 연령을 정책적으로 나누어 각 연령대별로 집중,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음

○ 윤철경박사

- children policy와 youth policy 구분이 국제적으로 존재함. 각 영역의 정체성 논의는 추후 과제로 넘기고자 함

<폐 회 사>

부록 3. 제1회 청소년 미래포럼 회의결과

2008년 제1회 「청소년 미래포럼」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 : 2008. 12. 9(화) 10:00~13: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동백홀
- 참석 : 14명
 - 청소년미래포럼자문위원: 김혜원, 길은배, 문성호, 손의숙, 오수생, 이민희, 이상주, 최순중(가나다 순, 8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 김현철 본부장, 박영균 본부장, 윤철경, 김영지, 김기현

□ 주요 회의 결과

- 청소년 미래포럼 운영계획
 - 월 1회 모임 개최(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안] 등 정례적으로 개최)
 - 매회 선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최종적인 내용은 본원 창립 20주년 행사인 「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2009. 6.11 목,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
 - 연구주제는 학문적 논의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
 - ※ 학문적 논의는 학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발표 내용은 논의를 거쳐 공통 입장을 정리한 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
 - 각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해 발표 및 토론 준비

○ 월레포럼주제 및 일정(안)

	주제	발표 책임자	분과
1월	청소년학의 개념 정립과 연구영역	이민희	
2월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김혜원	손의숙, 이상주
3월	청소년 시설과 단체	길은배	최순중
4월	청소년 재정	문성호	오수생
5월	아동미래포럼과 청소년미래포럼 합동회의		

* 분과 명단은 1순위로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임

□ 회의록

이명숙 원장 인사말

10월 16일 부임 근무시작. 연구원 구조조정 사안이 생겨서 그 문제도 해결할 겸 학계나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최근 동향이 부족하고 인사도 드릴 겸 여러 기관 및 학회를 방문함.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에 청소년 미래 포럼이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

포럼 연구진들의 구성은 학회 4군데에 두 분씩 추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 16명이 참여하게 되었고 청소년 미래포럼은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오늘 회의에서는 포럼의 목적과 진행방식 등을 논의한 후 월레포럼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 및 토론자를 선정했으면 함. 저희 기관은 간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됨. 최종적인 발표는 20주년 기념행사(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에서 이루어질 것임. 아동포럼과 청소년포럼 연석회의 개최도 고려.

국제학술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환경변화와 인재개발 전략 세미나로 Global Youth Forum 형태로 개최 예정.

운영계획 논의

윤철경 : 월레포럼 주제가 적절한 것인지, 수정 제안 등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람.

이민희 : 두 번째 역사적 발전 및 연구 동향에서 지도학 또는 정책학 용어 설명 필요

윤철경 : 청소년학은 정책이 이루어진 후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짐. 따라서 학문적 틀이 형성단계이므로 지도학 vs. 정책학이라는 구도를 제시

이명숙 원장 : 부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없애도 무방할 것

길은배 : 제안서의 1월(청소년학의 개념)과 2월(청소년학의 역사적 발전 및 연구동향) 주제가 중복되는 느낌.

이명숙 : 기회가 다섯 번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임. 정책과 연계될 주제로 잡는 것이 필요

길은배 : 미래포럼 결과를 정책화하고 법제도화한다면 논의주제가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

이명숙 : 여기에서 세부적인 법조문을 만드는 수준은 아니고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님. 학문적 논의로 가도 좋고 세부적인 주제로 가도 좋음. 논의 수준은 여기에서 정하면 됨. 심층적인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포럼을 운영하게 된 것임.

이민희 : 1월과 2월 하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개념정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학 개념 정립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음.

최순중 : 정확하게 미래포럼의 방향이 모호하다고 생각. 학문적 논의인지, 정책적 논의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방향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미래포럼이니까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

이명숙 : 위원 구성을 학계와 현장을 안배한 것은 이론과 실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단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지 제안

오수생 : 미래포럼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전체 포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함. 큰 틀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이상주 : 주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할 준비는 안 되어 있음. 국립수련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 있음. 진흥센터와 통합되면서 역할이 커져서 앞으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임. 앞으로 정책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참석.

손의숙 : 궁극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2월 동의하고 단, 청소년정책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함. 학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현장의 역할 등이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월 인력문제. 인프라 양성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며 전문성 함양 필요.

김혜원 : 형식적인 부분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6월에 전체적인 것을 발표할 것이고 5번의 모임에서 그림이 잡혀져야 연속적인 사업이 가능

하므로 주제나 방향 정하는 것을 구체화해야 함. 앞으로 청소년학이 어디로 가야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공통된 주제라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1, 2월 과거에 대한 고찰, 3, 4, 5월 향후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잡는 것이 필요. 개인적으로는 미래 방향제시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성호 : 아동포럼 따로 하는데 주제가 정해졌는지 궁금. 동일한 주제로 아동포럼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동포럼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월 주제인 청소년학 개념정립은 학회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미래인데 미래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향후 5년 아닌가 라면 현 정부 내에서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봄. 현재 주제로는 명확성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이명숙 :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음. 학문적 논의를 가져가는 것인가, 학문적 논의는 학회에다 맡기고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슈를 다룰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음.

길은배 : 학과 관련 부분은 펀드가 문제가 되는데 아웃소싱으로 학문을 다루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법부분임.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음.

오수생 :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 필요하다면 따로 토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모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

이명숙 : 이 포럼은 정책 위주로 가는 것으로 정리. 학문적 부분은 학계에서 논의하도록 저희 연구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지. 1,2,3월 주제는 청소년학회 등에 의뢰. 포럼과는 별도로 운영. 5월(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양성 및 배치) 주제 외에 새로운 주제를 제안했으면 함.

김현철 : 지도사 등 인력문제는 5월이면 늦고 연초에 해주면 좋을 것 같음.

이명숙 : 그렇다면, 1월달 주제로 잡기로 함.

이민희 : 양성과 배치를 두 달에 걸쳐 진행 제안.

오수생 : 상담사는 상담원에서 연구를 해서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어떨지.

최순중 :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분과를 구성. 양성과 배치하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듯. 다룰 주제들이 많음.

김혜원 : 명칭을 지도인력보다는 전문인력으로 변경 제안

이명숙 : 1월 주제는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로 하고 단체, 시설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번 포럼은 단순 세미나가 아니고 포럼
의 발표문을 작성해서 청와대, 복지부, 국회 등에 보낼 예정. 포럼에
서 논의되고 진단된 내용은 대표기관 이름을 넣어서 제출하고자 함.

길은배 : 보호, 육성, 대분류를 놓고 주제를 정해가는 방법이 있고 무작위 하
는 방법이 있음

김현철 : 1월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 같다. 2-4개 핵심주제 논의.

최순중 : 마지막 달은 아동포럼과 함께 하는 것 좋음. 주제는 프로그램,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로 두는 것이 필요.

길은배 : 지도자, 시설, 단체, 재정은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영역간 균형 필요.

이명숙 : 출발점으로써 청소년학 개념 정립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
주제로 이를 다룬 후 전문인력 양성 배치, 시설 및 단체, 재정 문제
를 다루기로 함

부록 4. 제1회 아동 미래포럼 회의결과

2008년 제1회 「아동 미래포럼」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 : 2008. 12. 10(수) 10:00~12:00
-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회의실
- 참석 : 14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 김현철 본부장, 윤철경, 김영지, 오성배
 - 미래전략자문위원: 박금주, 김경희, 박경자, 박영애, 서영숙, 우남희, 이향란, 임송자, 정미영(가나다 순, 9명)

□ 주요 회의 결과

- 아동 미래포럼 운영계획
 - 월 1회 모임 개최(매월 정례적으로 개최)
 - 발표는 아동·청소년 각자 준비하되, 처음부터 합동으로 하는 방식 제안
 - 매회 선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최종적인 내용은 본원 창립 20주년 행사인 「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2009. 6.)에서 발표
 - 연구주제는 학문적 논의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
 - ※ 학문적 논의는 학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발표 내용은 논의를 거쳐 공통 입장을 정리한 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
 - 각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해 발표 및 토론 준비

○ 월레포럼주제 및 일정(안)

	주제	발표 책임자	분과
1월	한국 아동의 특성과 현실		박영애, 곽금주
2월	아동 시설과 단체		우남희, 이향란, 정미영, 박경자
3월	아동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임송자, 김경희, 서영숙
4월	아동 정책 재정	박금렬	
5월	아동과 청소년 합동회의		

* 분과 명단은 1순위로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임

□ 회의록

이명숙 원장 인사말

아동·청소년 법률 개정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있음을 확인, 발달단계상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중재와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

1980년대 이후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법안과 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오다가 새 정부 들어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기계적인 통합보다는 기관·연구자의 입장에서 상대 정책과 법안을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함.

포럼 연구진들의 구성은 학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아 15명이 참여하게 되었고 아동 미래포럼은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오늘 회의에서는 포럼의 목적과 진행방식 등을 논의한 후 월레포럼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 및 토론자를 선정했으면 함. 저희 기관은 간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됨. 최종적인 발표는 20주년 기념행사(21세기 미래세대 Grand Forum)에서 이루어질 것임. 아동포럼과 청소년포럼 연석회의 개최도 고려. 국제학술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환경변화와 인재개발 전략 세미나로 Global Youth Forum 형태로 개최 예정.

운영계획 논의

박영애 : 아동포럼과 청소년포럼을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여지가 있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나중에 통합해서 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걱정.

이명숙 원장 : 1-4월은 아동 청소년 분야별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포럼을 별도로 하고 5월 이후부터(특히 6월 그랜드 포럼)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가 청소년 포럼 측에서 제안된 상태임. 아동·청소년 통합 법률의 시행령 작업이 매우 중요. 포럼이 그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구안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

윤철경 : 당분간은 별도로 운영. 논의의 발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 월례포럼 주제 적절한 것인지, 수정 제안 등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람.

서영숙 :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미래포럼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명칭이나 역할 기능이 추후에 조정되는 것인지 궁금

이명숙 원장 : 아동에 대한 연구로 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도 해소되었음. 최종적인 승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임.

임송자 : 포럼의 주제는 학문적인 것보다는 현장적인 접근이 우선 필요한 상황임.

우남희 : 학문적인 것은 학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

박영애 : 청소년 포럼과 만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주제가 구성되기 바람.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와 아동기의 중요성, 아동 전문가와 아동의 현실과 아동 정책의 관계:반성과 정리, 아동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아동 정책의 기본 틀 등

박경자 : 아동과 청소년 위원들이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
3,4,5월에는 통합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서영숙 :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과 시설의 기능,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통합 논의도 가능할 것임. 아동과 청소년 포럼을 처음부터 같이.

이향란 : 같이 하면서 각각 준비하여 발표하는 것이 어떨지.

이명숙 원장 : 아동은 학문적으로 접근, 청소년은 정책과 법이 우선 이후 학문적으로 접근, 학문적인 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2,3,4는 공통 관심사임.

우남희 : 청소년학과 달리, 아동학은 역사와 정체성은 이미 형성되어 있음.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 아동의 정체성, 시설에서 어떤 전문가를 원하는가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제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운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운숙·이춘화·유의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이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윤숙
- 08-R27 이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택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자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6

신정부의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인 쇄 2008년 1월 5일

발 행 2008년 1월 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72-7 (93330)